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0. 11. 19(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안 건 : 총 15건

- 심의 12건(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 등)
- 검토 2건(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재검토 등)
- 보고 1건(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서울 이윤택 한글영비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	공개
2	서울 홍인지문 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2차)	공개
3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2차)	공개
4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공개
5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수성당 개축공사	공개
6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공개
7	담양 개선사지 석등 주변 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2차)	공개
8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동암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	공개
9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2차)	공개
10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정비공사	공개
11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산사태 복구사업	공개
12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13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재검토	공개
14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검토	공개

【보고사항】

15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온양 소로1-451호 확포장공사 -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등 주변 홍천성당 주변정비(2차) 	공개
----	---	----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심우암 내 요사채 건립 및 석축 정비
-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 봉암사 안길 포장공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등 주변 지방도920호선 인도설치공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등 주변 창고시설 증축
-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물 수리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인법당, 부속건물 보수 및 주변정비 (변경허가)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가을철 성수기 사찰 판매점 운영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등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고령 장거리 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안내소 설치
-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농지 원상회복 및 유실수 식재
- 서산 개심사 대응전 주변 명부전(충남 문화재자료) 보수공사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숲가꾸기 산림사업
-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변경허가)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공중화장실 후면 옹벽 보강공사
-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신축
-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등 주변 보현사 수각 신축
- 청양 장곡사 상 대응전 등 주변 설선당(충남 유형문화재) 해체 보수 및 봉향각 보수공사
- 구례 연곡사 북 승탑 주변 공중화장실 및 안전난간 설치
- 여수 진남관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주변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
-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영주 택지 가흥동주공아파트 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및 정비공사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2-001

1. 서울 이운택 한글영비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 노원구 소재 보물 제1524호 「서울 이운택 한글영비」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이운택 한글영비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하계1동 12번지
 - 지정일 : 2007. 09. 1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노원구 하계동 266, 중계동 31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31.4m
 - 사업내용 : 도시철도 건설공사
 - 굴착길이 : L=230m (총연장 13.4km 중 허용기준 1구역내 230m 해당)
 - ※ 1구역내에서 지상굴착은 없으며, 발파지중터널 굴착

* 예상 발파진동	0.171cm/sec (허용기준 0.2cm/sec)
-----------	------------------------------

2. 서울 흥인지문 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2차)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8.20.) : 부결
 - 역사 문화 환경에 맞지 않음, 동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대안 마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창신동 463-2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내, 문화재에서 60m

○ 사업내용 :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

구분	'20.08.20.(부결)	조정(안)
부지면적	919.74m ²	900m ²
건축면적	170.4m ²	79.2m ²
건물높이	5.5m(지상1층)	4.6m(지상1층)
건물구조	전통목조건축물	전통목조건축물

* 기존 관리소(컨테이너) 철거 및 안내소, 화장실 용도 포함

○ 활용프로그램

- 보존 프로그램 : 답사, 서포터즈 프로그램
- 활용 프로그램 : 무예24시, 마당놀이, 옹성 음악회, 옹성 위 미술관, 패션쇼
- 체험 프로그램
 - 홍인지문 알리기 체험 : 옹성 쌓기 체험, 공포 쌓기 체험, 오간수문, 이간수문 레고, 도미노 체험
 - 홍인지문 역사 체험 : 전차타기, 복식체험, 전통공예체험

3.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 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이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8.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사로 345(부석면)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301-1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전체사업 현황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금차)
사업 내용	국유림관리 사무소, 파고라 등	대형버스 주차장 85대, 수목식재 등	소형 주차장 674대, 야생초화원 등	의상마당, 부석사이야기길, 화엄마당, 야외무대, 기존도로 포장 등
사업 기간	2015. 12	2018. 4	2020. 4	2020. 12 ~ 2022. 7
사업 면적	651m ²	8,048m ²	16,791m ²	185,641m ²
사업 비	1.5억	23억	18억	61억
허가 대상	대상아님			대상

○ 사업내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분	'20.8.20.(부결)	금차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 토 : 1,700.0m³ · 성 토 : 4,900.0m³ - 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관(D250~700) : 105.0m · 우수맨홀 : 10개소 · 우수받이 : 25개소 -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포장 : 1,480.0m² · 아스팔트 덧씌우기 : 760.0m² · 보도 포장 : 890.0m² · 콘크리트 포장 : 15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재포장 : 5,100.0m² · 보도 재포장 : 760.0m²

구분	'20.8.20.(부결)	금차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데크 1식, 팔각정자 1개소, 사각의자 14개소, 야외테이블 6개소 · 앉음벽 1식, 플랜터 1식, 법계도 안내판 1개소, 미로공원 1식 · 수목보호판 11개소 -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6,954.0m² · 흙콘크리트포장 : 1,794.0m² - 식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목 : 왕벚나무, 소나무 외 16수종 159주 · 관목 : 개나리 외 6수종 10,440주 · 초화류 : 사사조릿대 4,000본 - 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관(D150~250) : 249.0m · 집수정 : 33개소 · 우수받이 : 3개소 · 잔디수로 : 55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엄림 1식, 평의자 4식 · 앉음벽 2식, 플랜터 2식 -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매트포장 : 1,510.0m² · 흙콘크리트포장 : 771.0m² - 식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목류 : 366주 · 관목 : 7,400주 · 초화류 : 6,000본

4.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강원 철원군 소재 보물 제223호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06.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2.20.) : 원안가결
- ※ ‘19년 3월 제1차 자체검토회의 결과(2019.03.13. / 변경허가)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부결
 - 지형 변화(절토)가 확대되는 등 역사문화 경관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구 분	'18.12월 / 가결	'19.3월 (변경1차) / 부결	'19.12월 (변경2차) / 부결	금차 신청안
신청인	○○○	○○○	○○○	○○○
대지면적	33,515m ²	좌동	좌동	좌동
사업면적	9,653m ²	10,420m ²	7,490m ²	7,900m ²
동수	6개동	10개동	10개동	단독주택 6개동 신축 (3동×85.05m ² 3동×97.89m ² 총 548.82m ² /1층, 높이 6m)
절·성토	최대 4.8m (절토310m ³ , 성토12,018m ³) (부지내도로 B=6.0m L=173.2m)	최대 11.74m	최대 4.99m	최대 5.0m (절토2,604m ³ , 성토8,413m ³) (부지내도로 B=6.0m L=223.0m)
석축 높이	식생블록 최대 2m	식생블록 최대 8m	자연석쌓기 최대 9.9m	식생블록 최대 2m

5.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수성당 개축공사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수성당 개축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수성당 개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177-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4m, 문화재에서 84m]
 - 사업내용 : 수성당 개축
 - 건축면적 : 70.29m²
 - 규모 : 정면5칸, 측면2칸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공포) 소로수장
 - 지붕 : 맞배지붕, 홑처마, 막새마감, 한식기와(중와) 3겹잇기
 - 용도 : 요사채(천불전 관리사)

6.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강진 무위사 템플스테이 건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5-4, 117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1m, 문화재에서 74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건립
 - 건축면적 : 82.62㎡
 - 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민도리
 - 지붕 : 팔작지붕, 홑처마, 막새, 한식기와(중와) 3겹잇기

7. 담양 개선사지 석등 주변 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2차)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소재 보물 제111호 「담양 개선사지 석등」 주변 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담양 개선사지 석등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593-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590번지 일원

구분	‘20.05.21.(부결)	조정(1안)	조정(2안)
문화재와 이격거리	보호구역 내	보호구역에서 10m~	보호구역에서 10m~
절성토량(사토량)	96m ³	730m ³	11,000m ³

구분	'20.05.21.(부결)	조정(1안)	조정(2안)
녹지 훼손면적	180m ²	1,200m ²	5,500m ²
절토사면 높이	H=0~6.0m	H=8.0~10.0m	H=17.0~28.0m
지장분묘	없음	3기	11기
사업내용	총연장 L=483m, 2차로(폭 8m)로 개선	총연장 L=468m, 2차로(폭 8m)로 개선	총연장 L=528m, 2차로(폭 8m)로 개선

8.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동암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보물 제273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동암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태안사 동암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7m, 문화재에서 85m
 - 사업내용 :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
 - 건축면적 : 76.5㎡ / 지상 1층
 - 규모 : 정면 4칸, 측면 3칸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 지붕 :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존 건물현황

- 건축면적 : 90㎡ / 지상1층
- 구조 : 목구조, 조적조 / 지붕 : 골합석

9.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2차)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제3구역 “관계법령”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0.15.) :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여주 창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상동 13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상동 65-18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8m

○ 사업내용 : 종교집회시설 부지(농구장, 주차장 등) 조성

구분	'20.10.15.(부결)	조정(안)
자연석쌓기	50m(H=2.0m미만)	29m(H=1.5m미만)
돌쌓기	18m(H=3.0m)	-
흙관매설	50m(D300mm)	-
집수정	2개소(600*600)	1개소(600*600)

10.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축서사 주변정비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진입로 정비 및 하천 복개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 지정일 : 1989. 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0m
 - 사업내용 : 축서사 주변정비
 - 하천(세천) 복개 L=30m
 - 칼라아스콘 포장 A=1,420㎡, 콘크리트포장 4㎡
 - 화강석 경계석 해체 L=52m, 설치 L=60m

11.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산사태 복구사업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산사태 복구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번지
 - 지정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산35번지 외 1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103m
 - 사업내용
 - 사방댐 설치: 1개소(상장 21m, 하장 17m, 유효고 3m)
 - 큰돌바닥막이: 6개소(B=2m, H=1~2m)
 - 진입도로개설: 191m(B=3.5m)

12.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가.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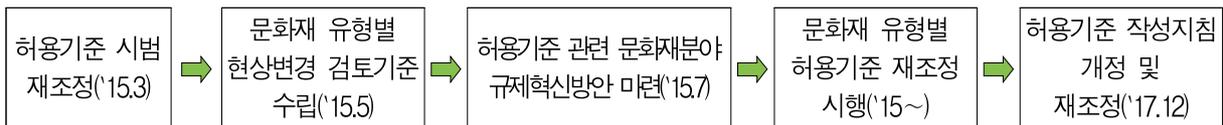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0.10.15.) : 조건부가결
- 사찰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나.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방안」('15.7)에 따른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 최근 5년간 허용기준 조정건수

년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수	336건	46건	7건	166건	60건	57건

- 허용기준 작성근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449호, '17.12.18)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419(2020.1.21.))

※ 재조정 공통원칙

- 실제로 개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인 '원지형보존', '신축불가 지역'을 '개별심의 구역'으로 변경(제1구역)
- '15년 이전 허용기준 중 문화재 명칭변경 미반영 건 수정반영
- 경관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칠 영향이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 등 타 법령 적용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55호 진안 수선루 등 62건

(신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등에 따른 허용기준 마련 (진안 수선루 1건)

(수정) 문화재명칭 및 범례표 수정 등 경미한 사항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등 57건)

(조정) 지형 등을 고려한 허용기준 완화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등 4건)

(3) 향후계획

- 국보·보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관리체계 구축
 - 매년 지자체 수요조사로 조정대상 선정
 - 기준 설정 후 10년이상 도래, 보물 승격에 따른 확대, 원위치 아닌 문화재 주변 재조정 필요, 다수 민원제기 대상 등
 - 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소위원회) 실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관련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

[붙임]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1부.

[붙임]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신규		1건		
보물	2055	진안 수선루	신규	신규
수정		57건		
국보	7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및 공통사항 조정
국보	47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380	하동 쌍계사 승탑		
보물	500	하동 쌍계사 대웅전		
국보	48-1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국보	144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283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국보	147	울주 천전리 각석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국보	307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국보	315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37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보물	169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보물	171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보물	172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물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112	광양 증흥산성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17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93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316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보물	317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318	청도 운문사 석조사천왕상		
보물	678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835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국보	84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국보	130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 변경없음	공통사항 조정 등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보존→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43	서산 개심사 대웅전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162	청양 장곡사 상 대응전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81	청양 장곡사 하 대응전		
보물	188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89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296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297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307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372	진주 용암사지 승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373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보존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472	의령 보천사지 승탑		
보물	407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429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467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470	구미 도리사 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504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655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675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676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804	순천 정혜사 대웅전	○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831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832	영주 성혈사 나한전	○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907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943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945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946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보물	1115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4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1293	공주 계룡산 중악단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4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942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 변경없음	공통사항 조정
조정		4건		
보물	197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 제1,2,3,4구역 일부 조정	1구역(신축불가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 제2구역과 제3구역 통합 및 완화	3구역 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584	구례 운문효공 신도비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공통사항 조정
보물	1372	함평 고막천 석교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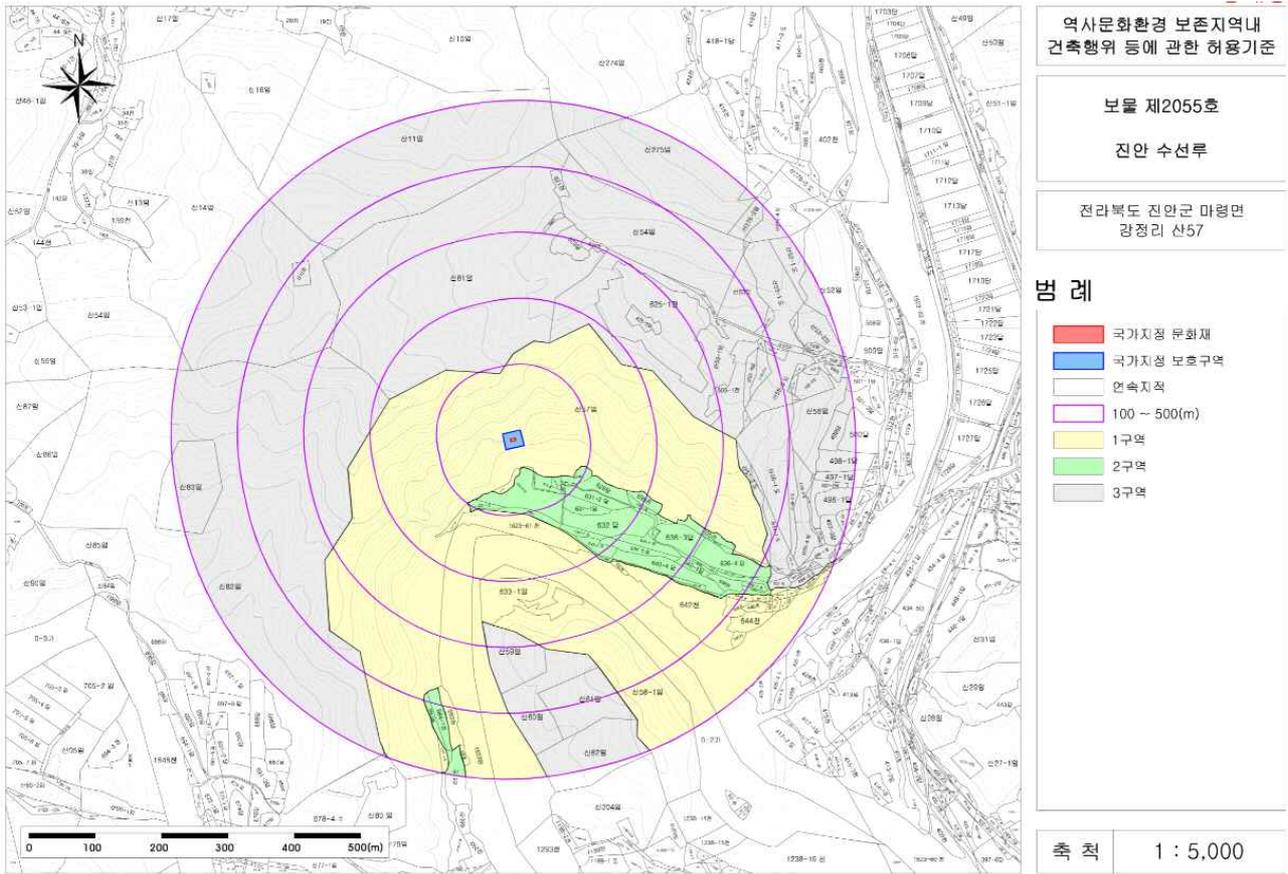
[붙임 1] 허용기준 신규 1건

[붙임 2] 허용기준 수정 57건

[붙임 3] 허용기준 조정 4건

[붙임 1] 허용기준 신규 1건

▣ 보물 제2055호 “진안 수선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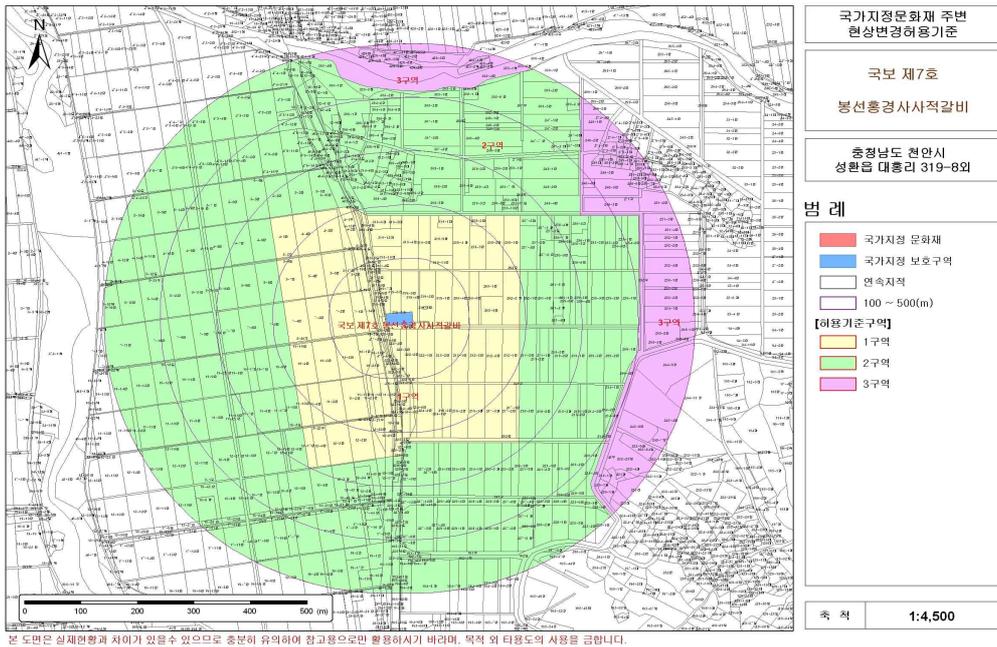


【 범례 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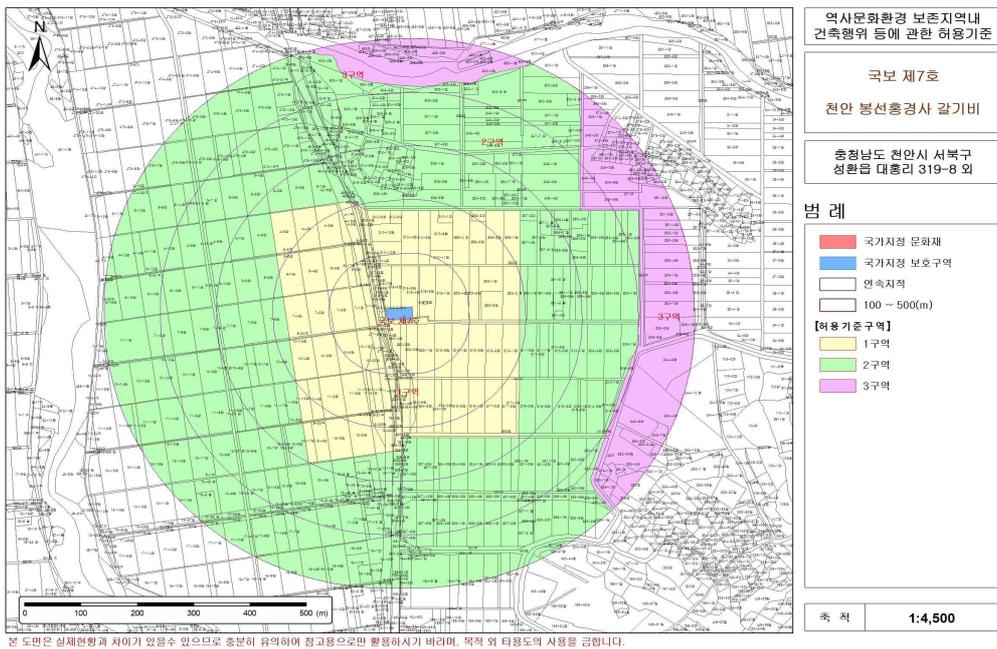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암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붙임 2] 허용기준 수정 57건

▣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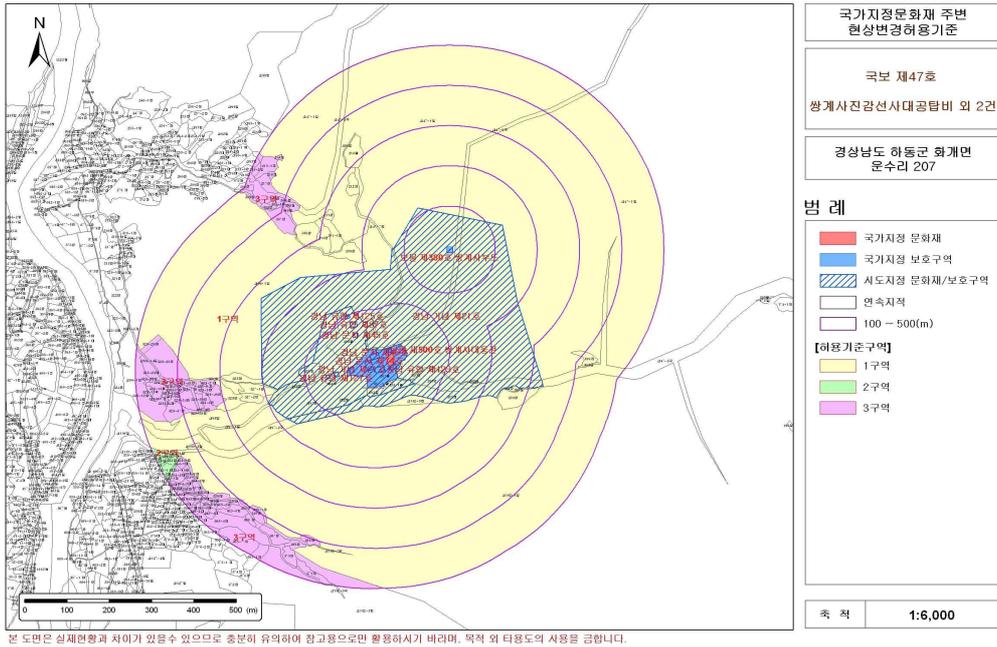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최고높이 8m(2층)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공사 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실시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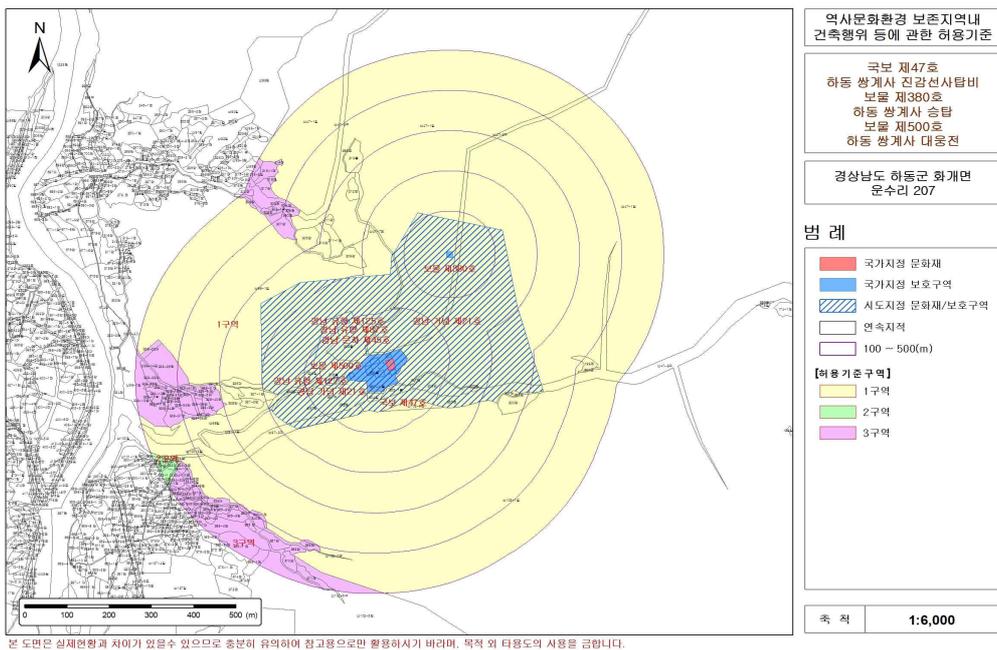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사 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실시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물 제380호 “하동 쌍계사 승탑”,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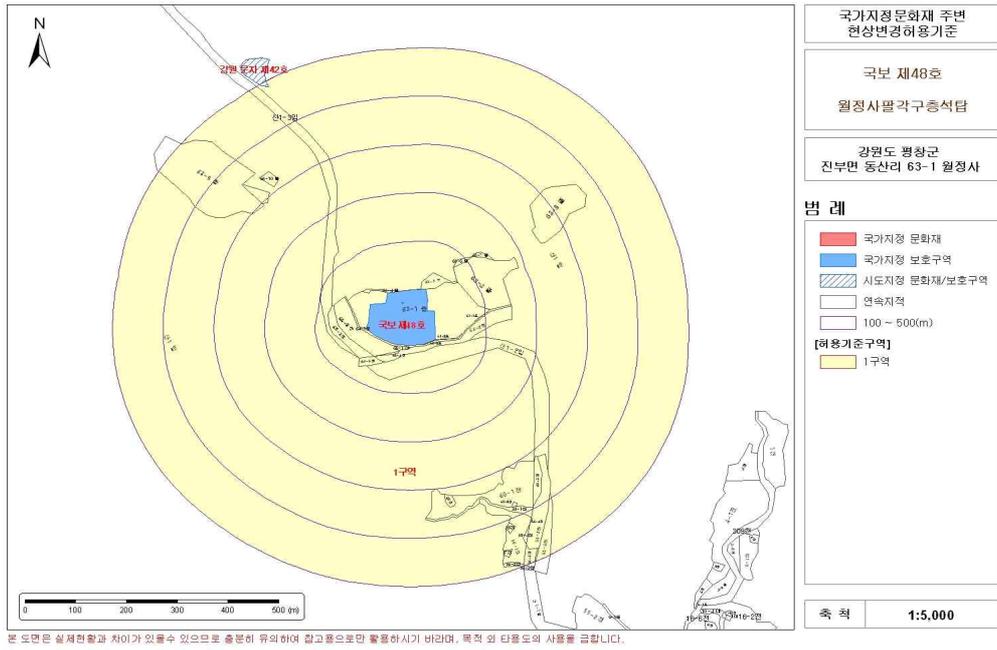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쌍계사 경내는 제외)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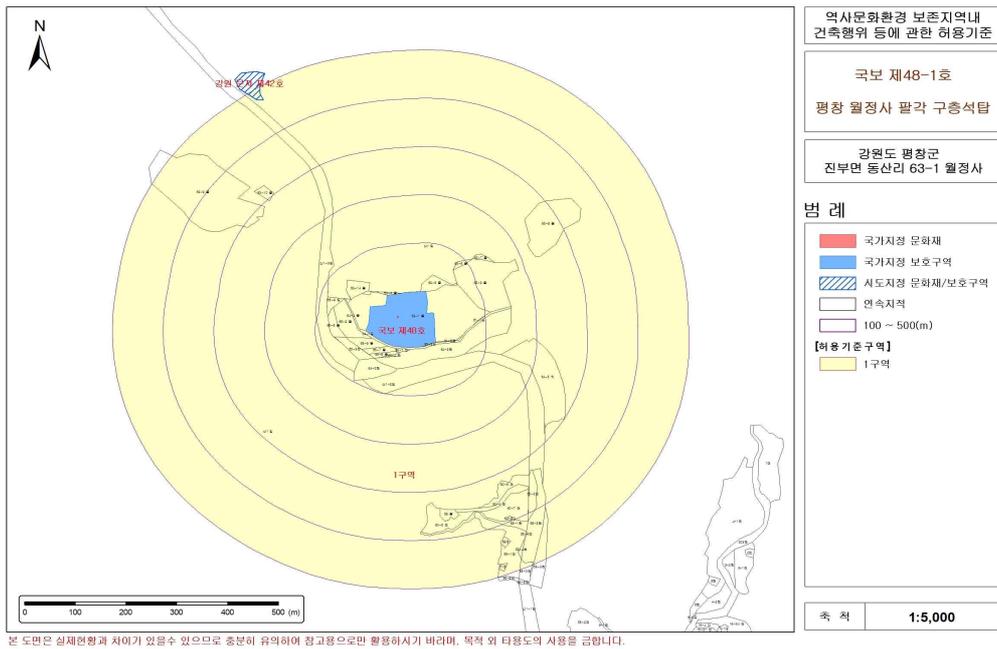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쌍계사 경내는 제외)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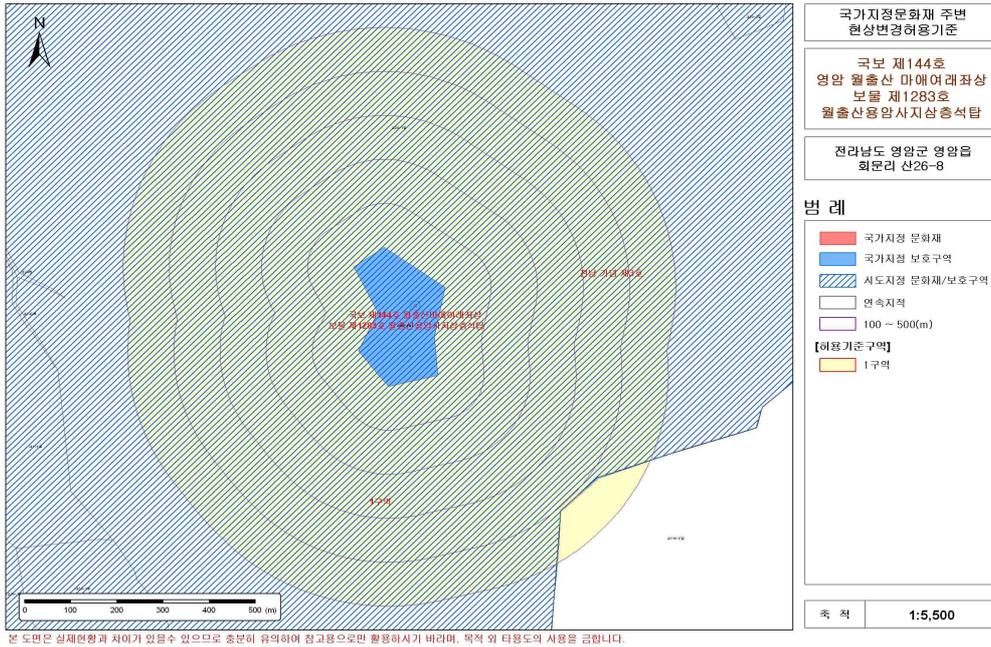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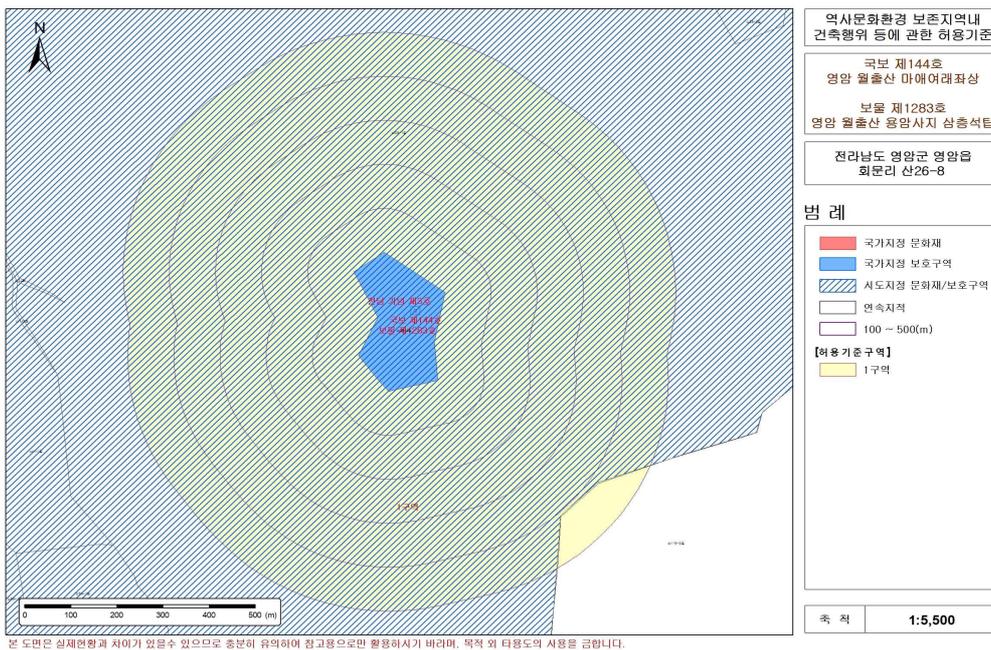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283호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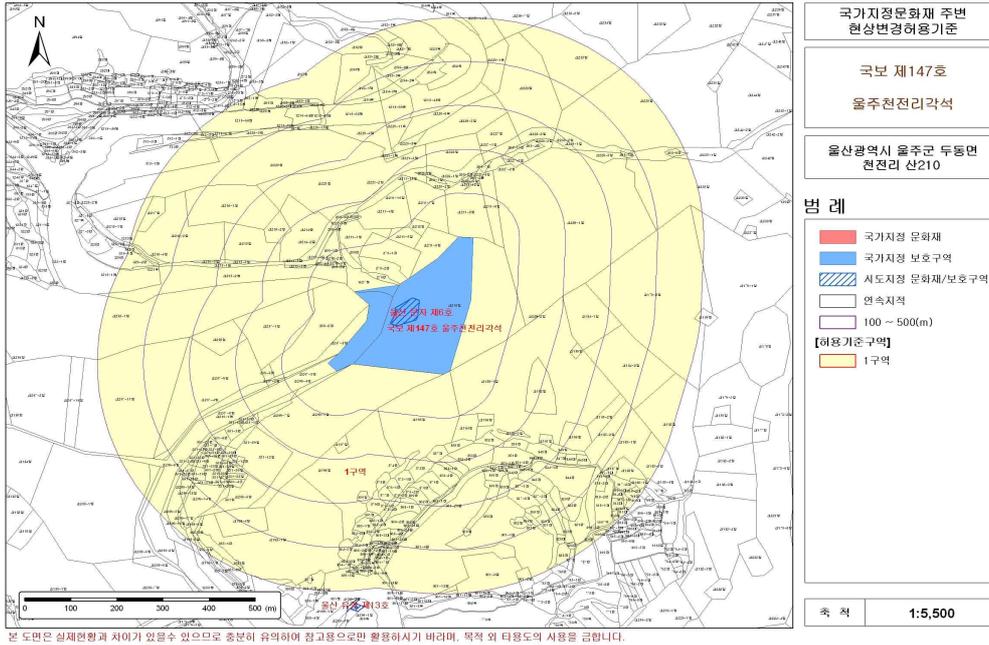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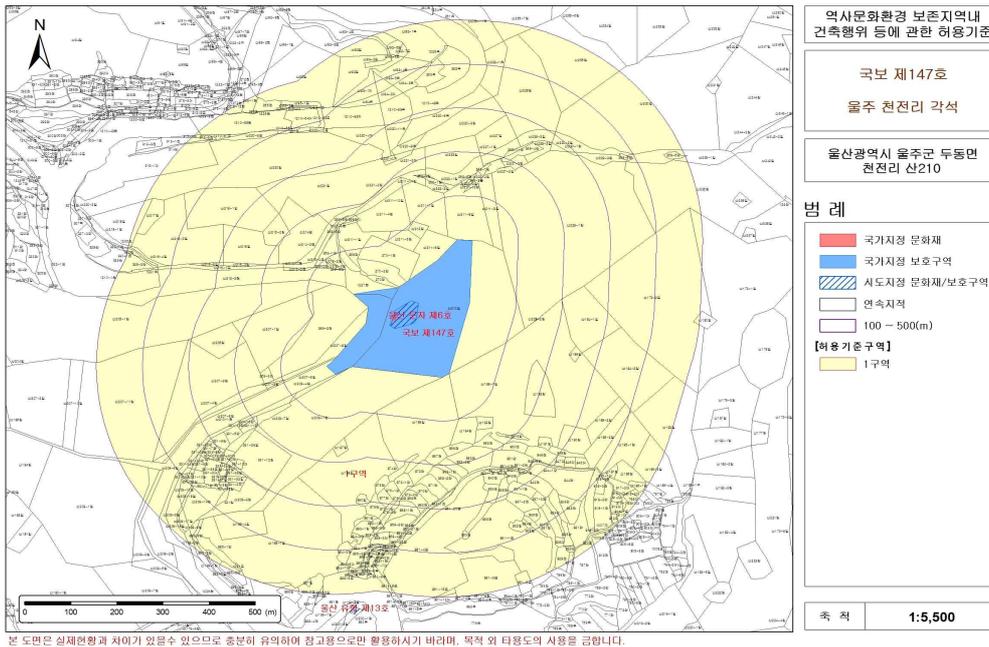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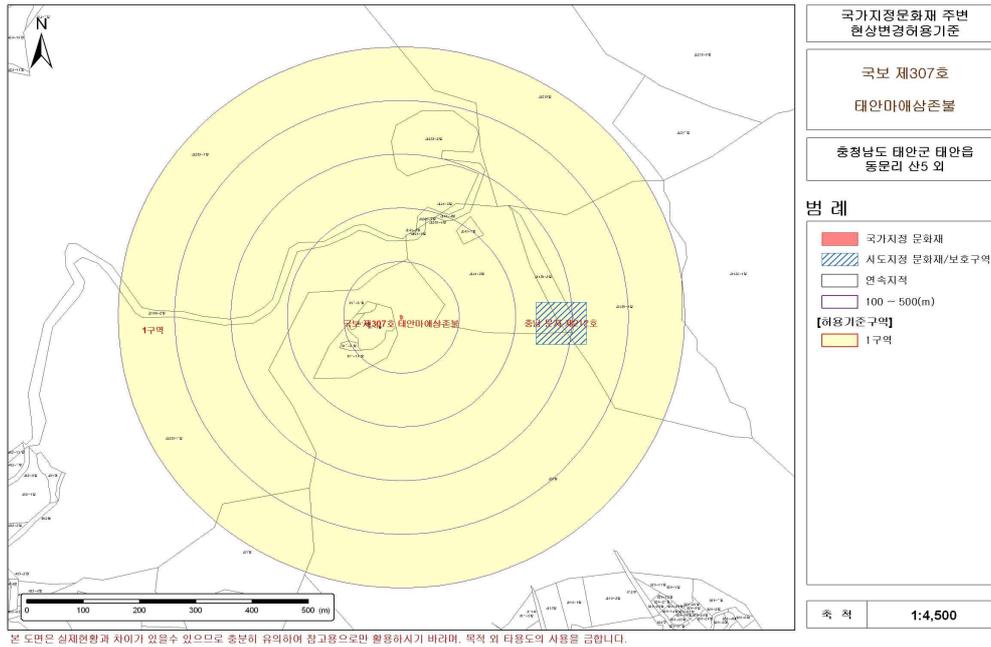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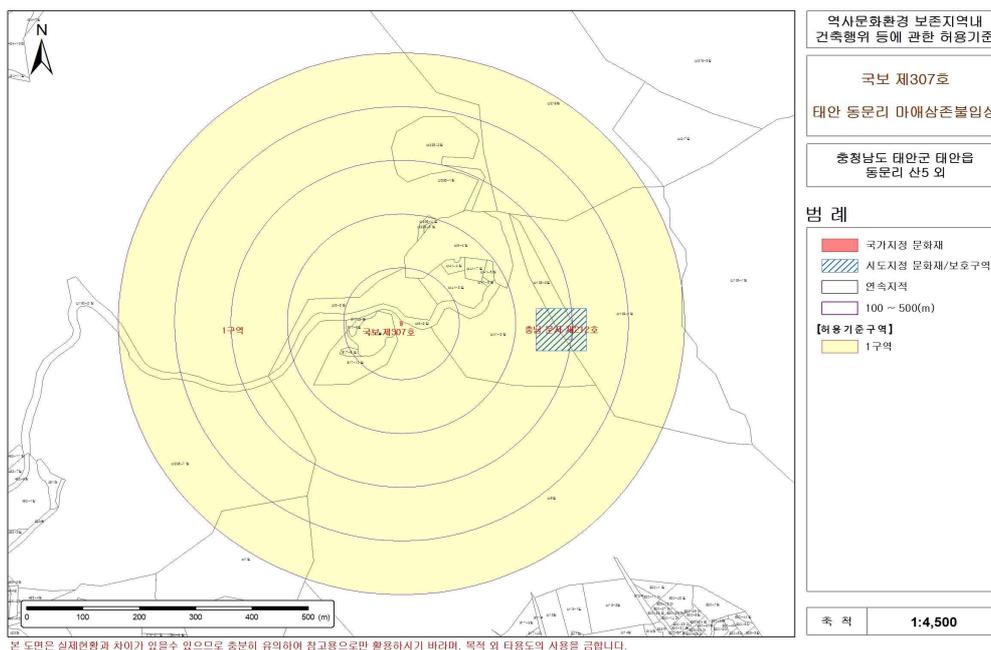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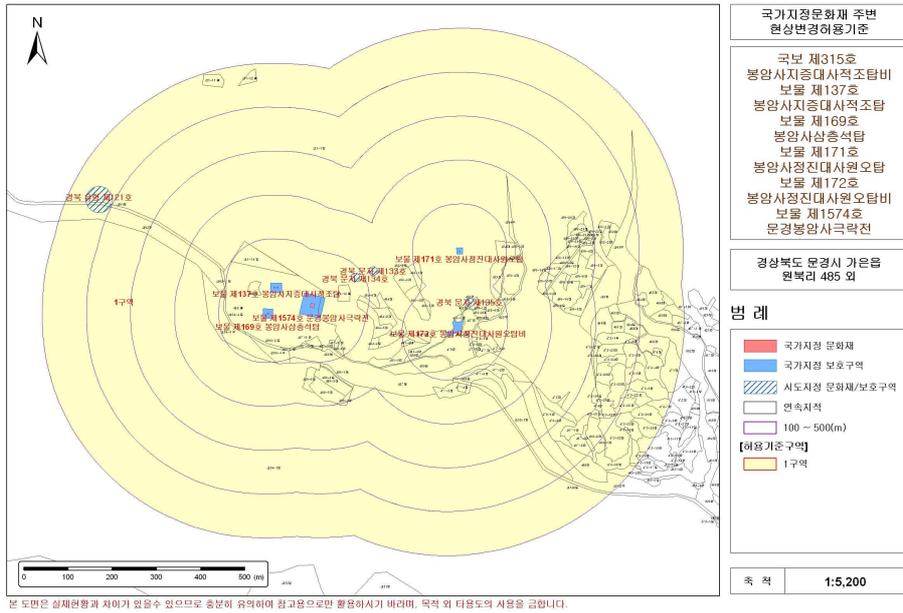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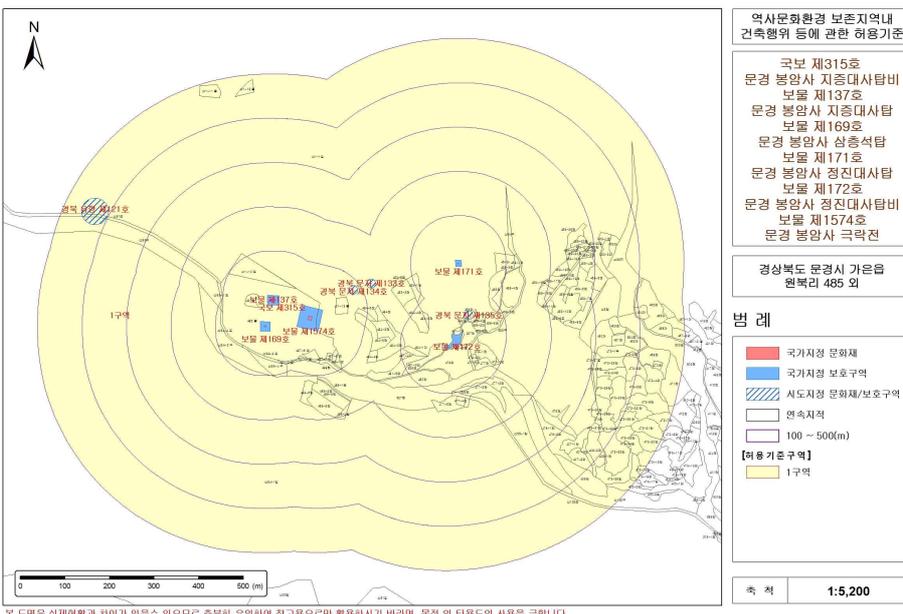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315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보물 제137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보물 제169호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보물 제171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보물 제172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물 제1574호 “문경 봉암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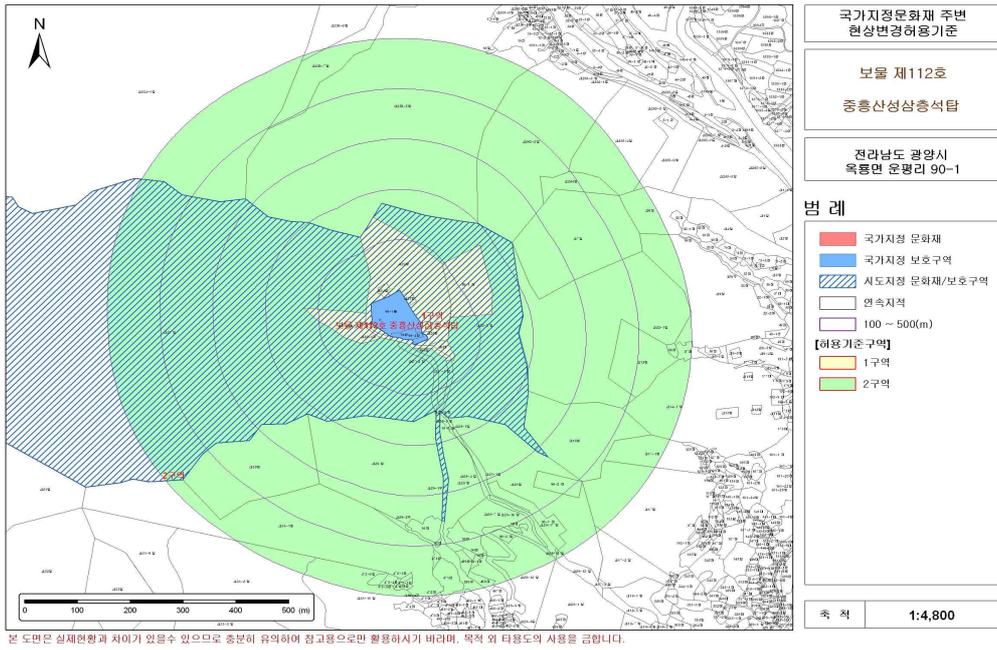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봉암사 경내는 제외)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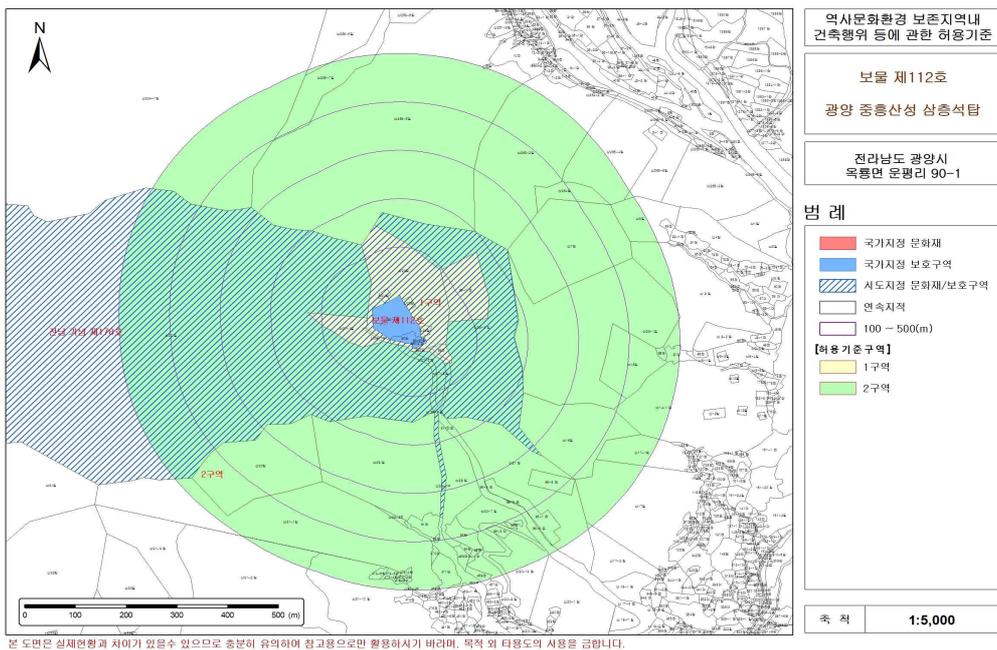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12호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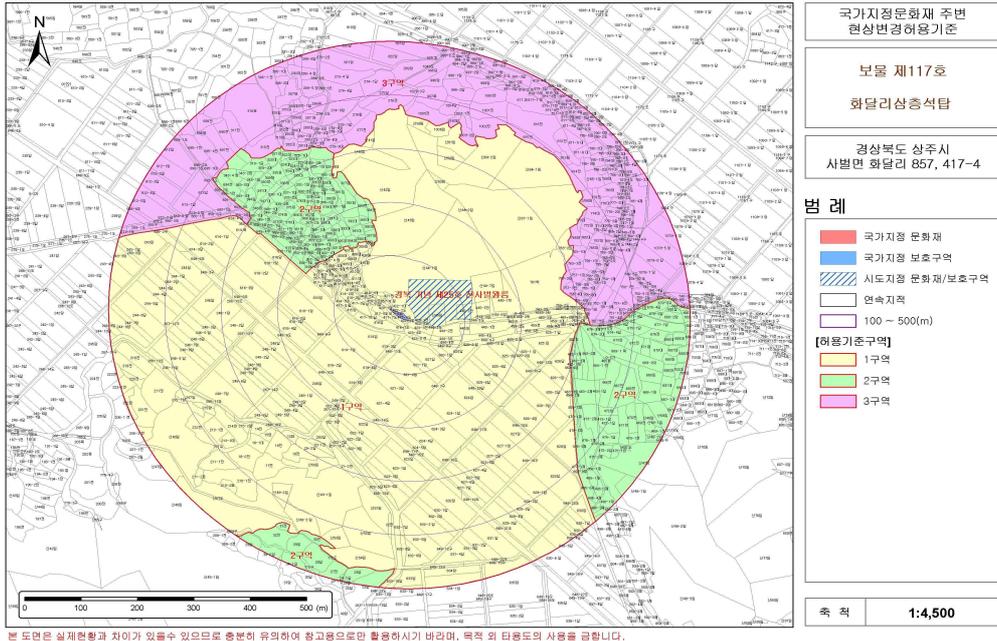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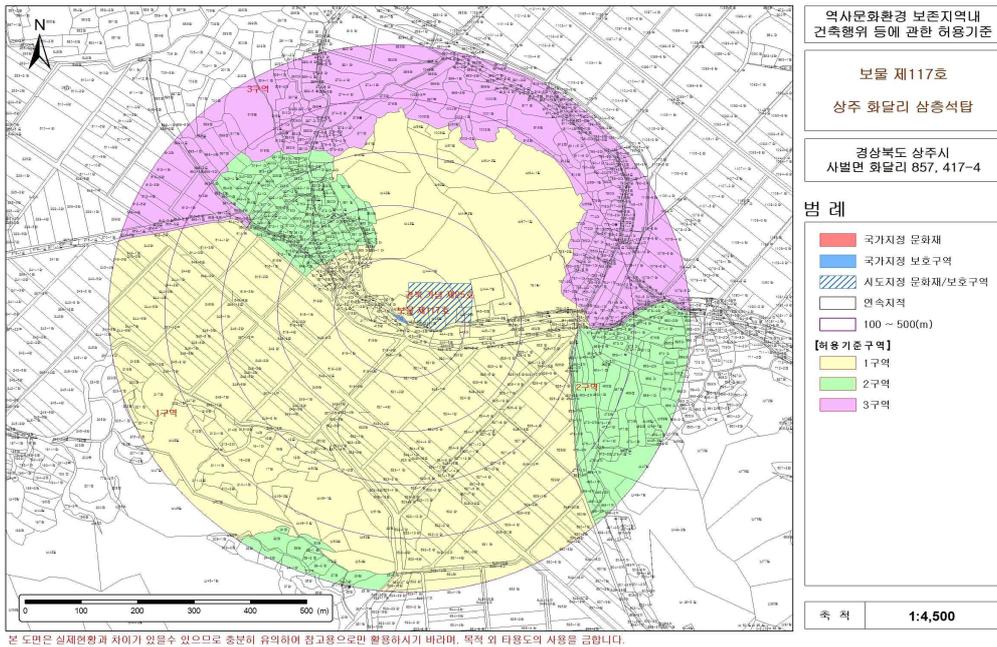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17호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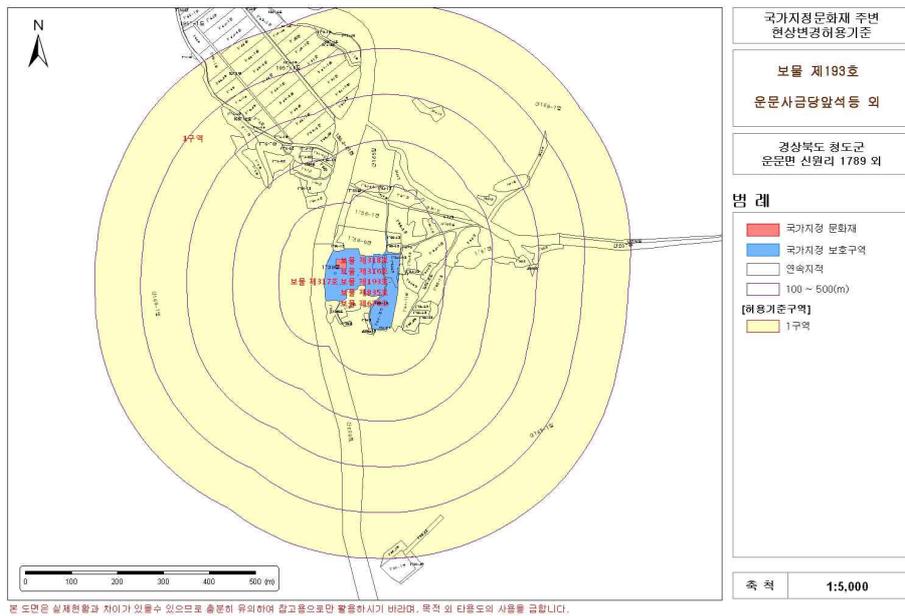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항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항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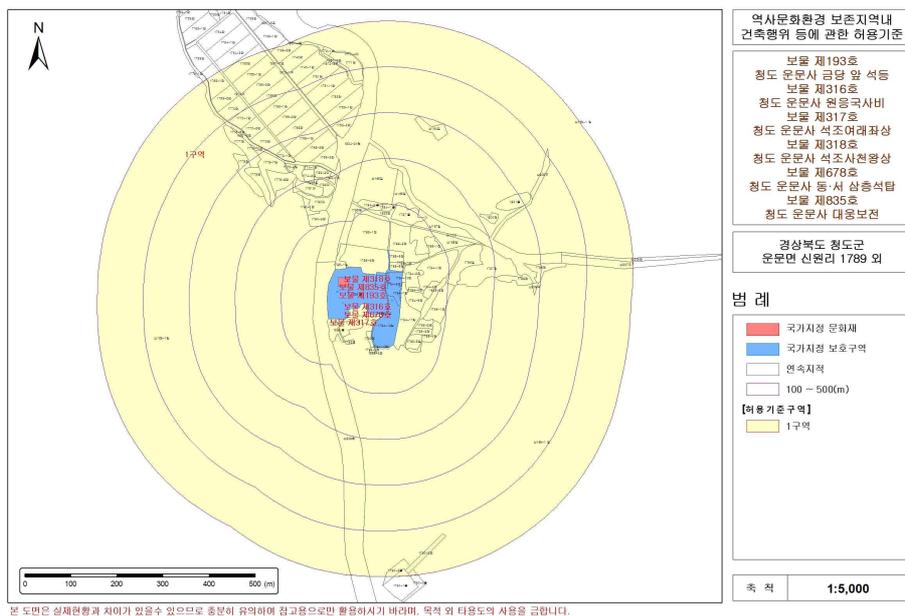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93호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보물 제316호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보물 제317호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18호 “청도 운문사 석조사천왕상”, 보물 제678호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835호 “청도 운문사 대응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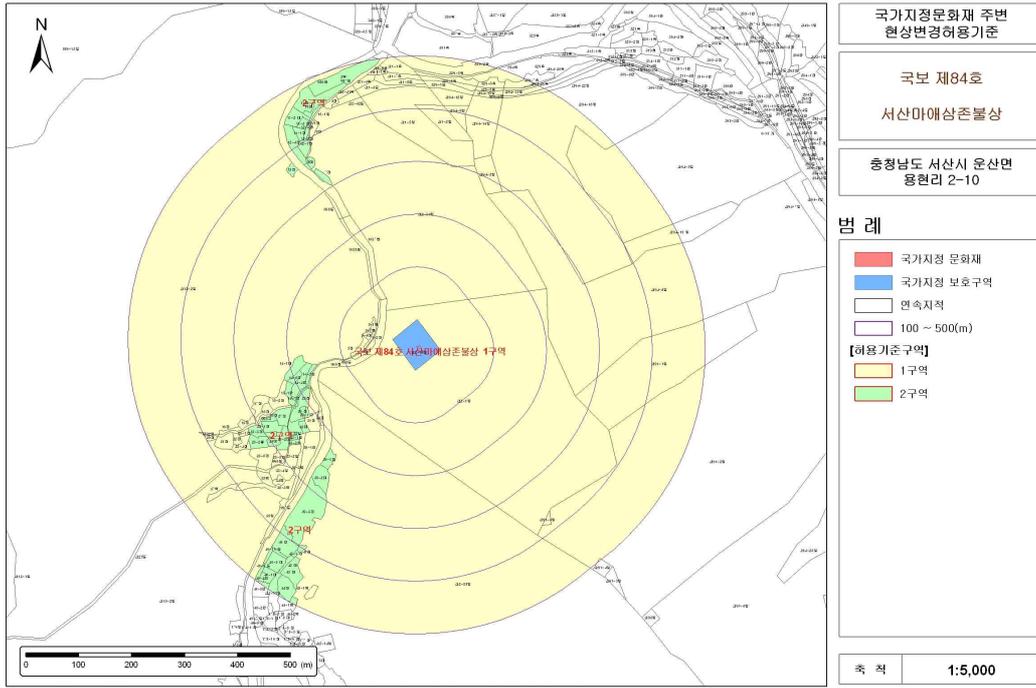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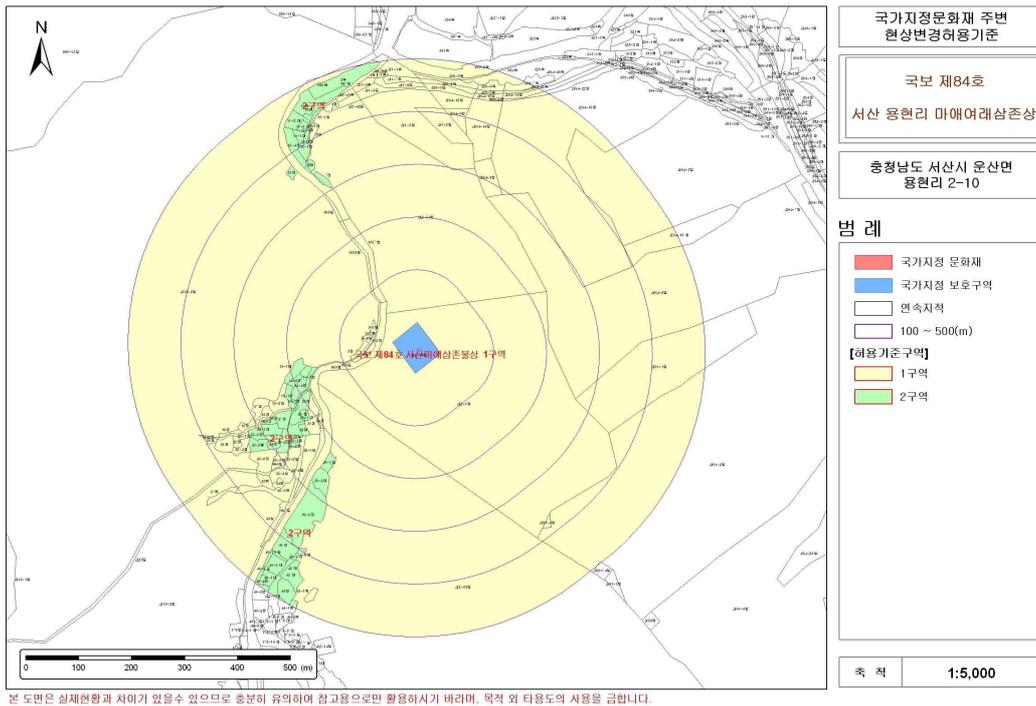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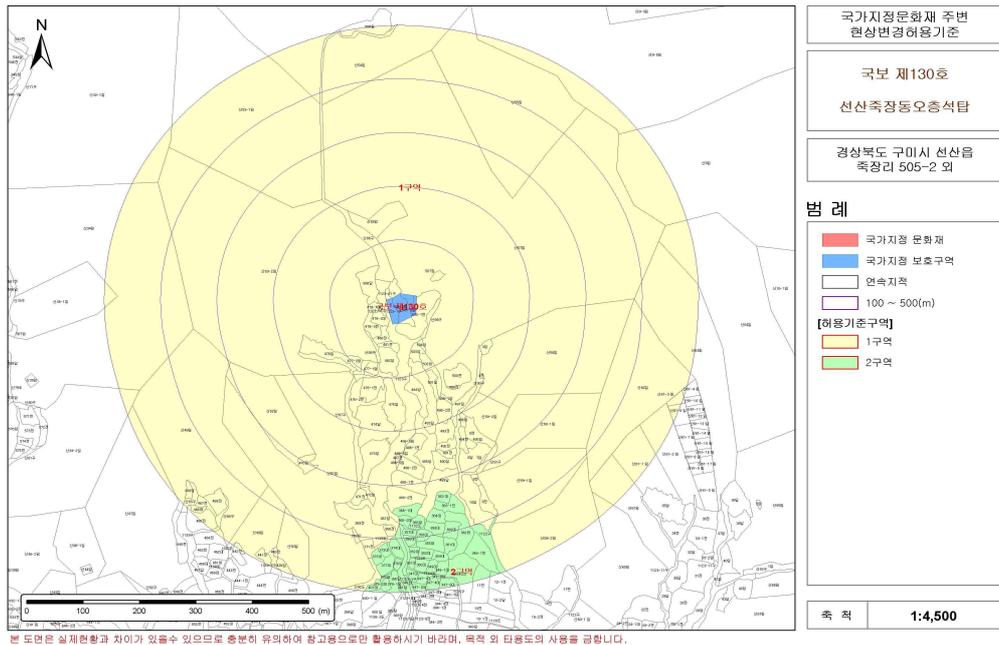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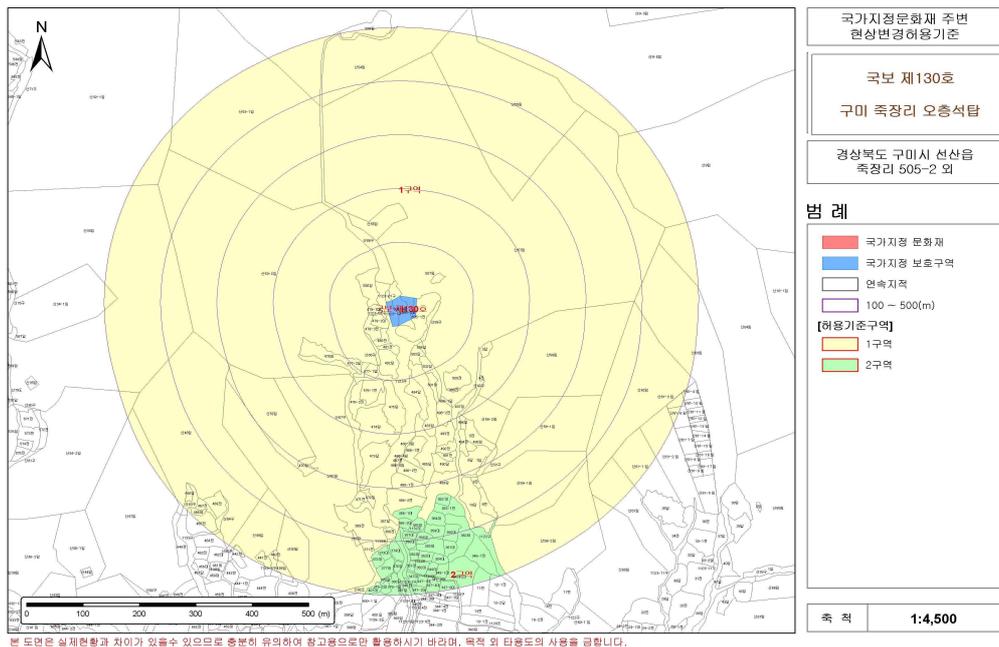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보 제130호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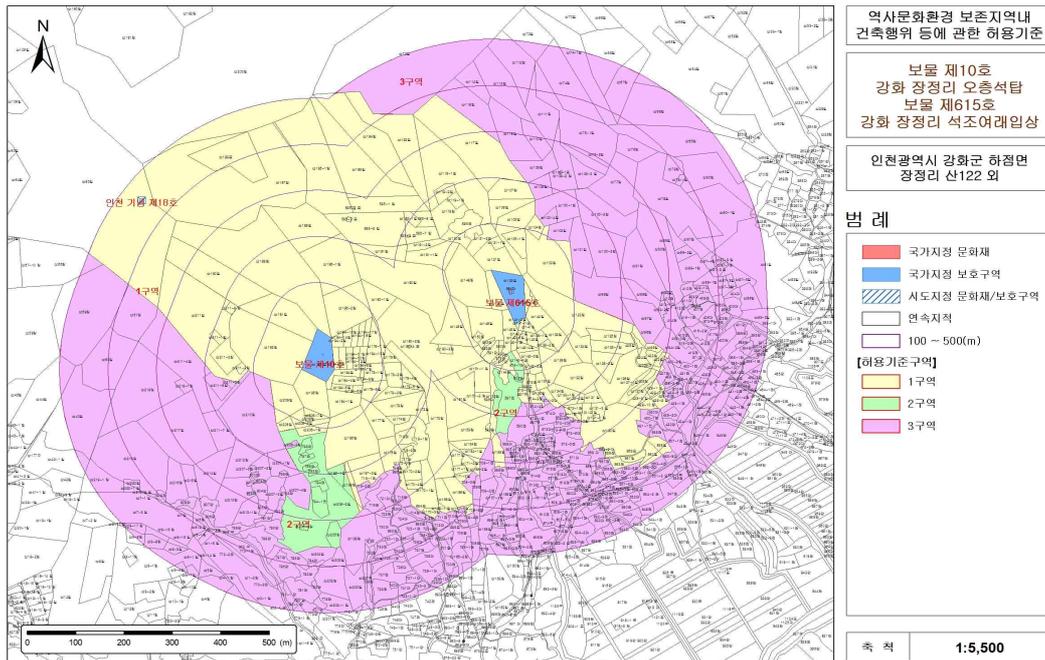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도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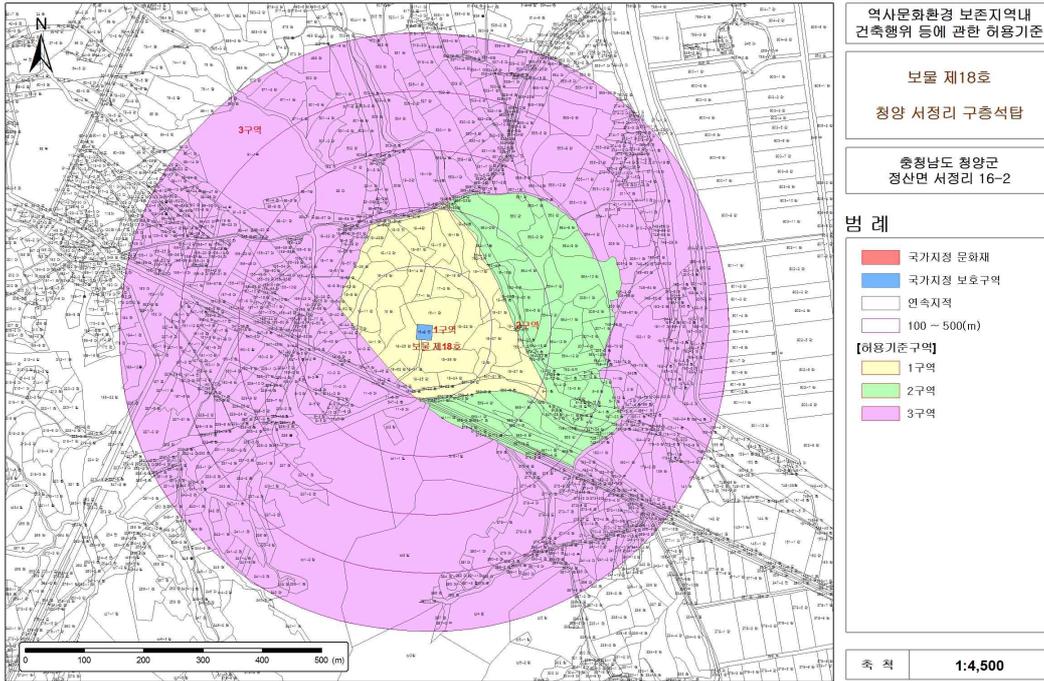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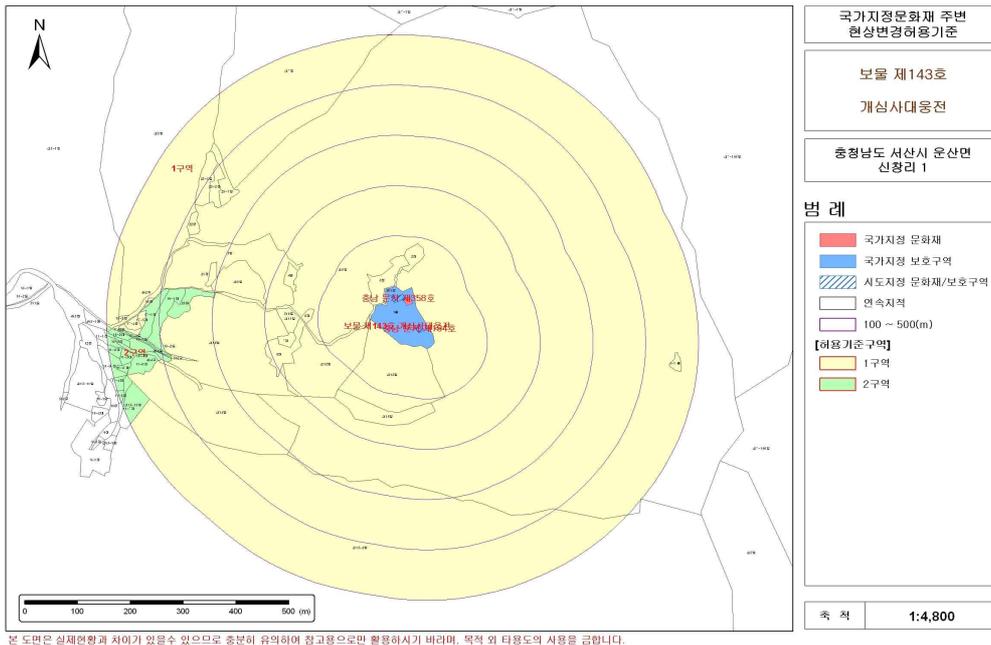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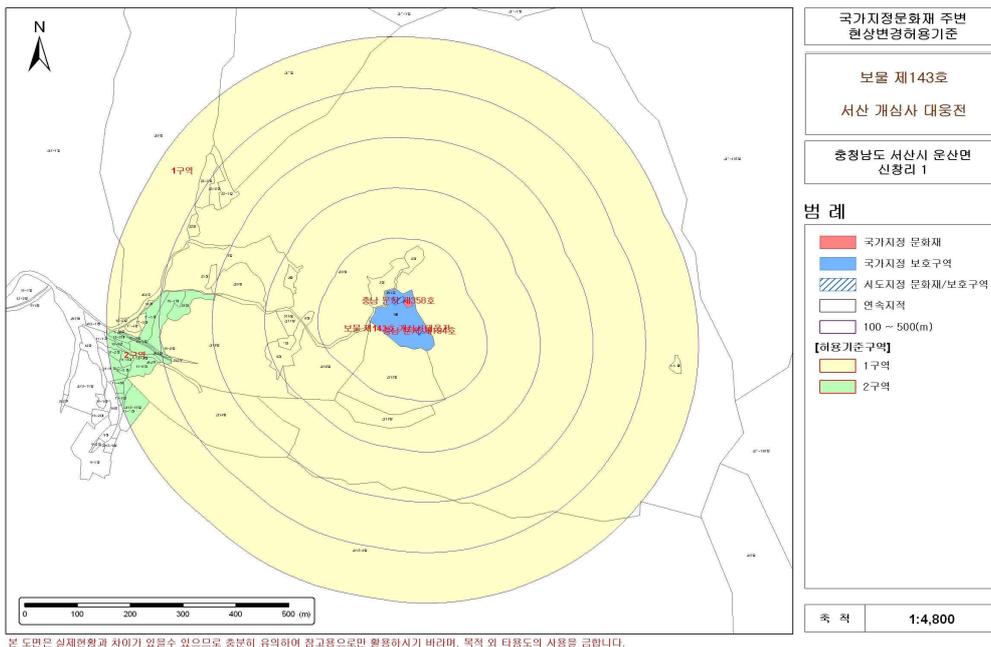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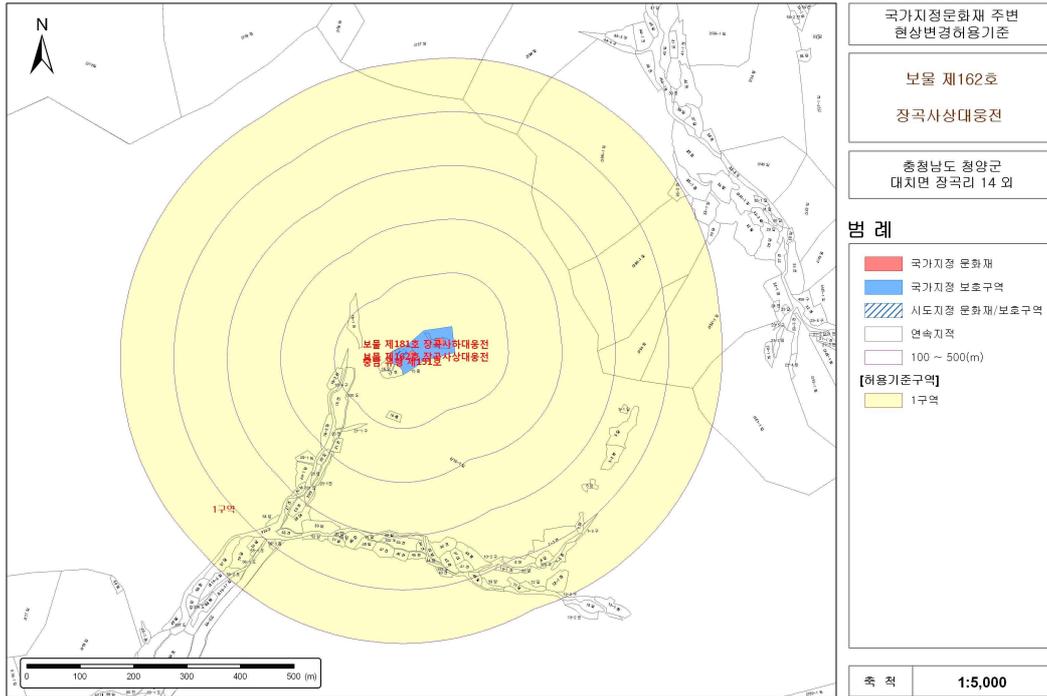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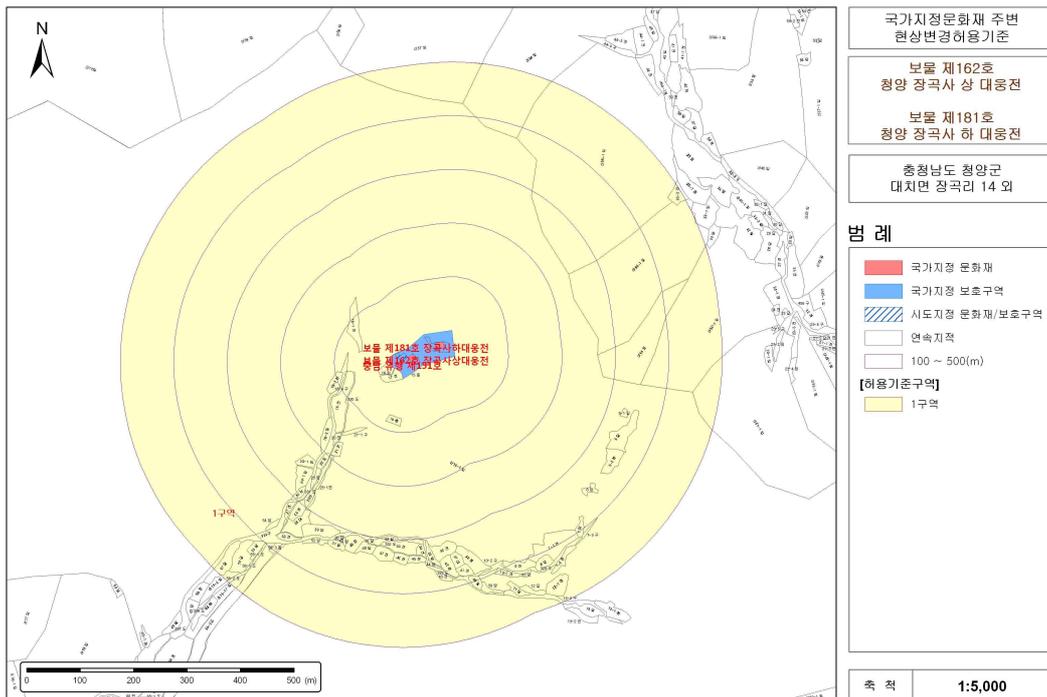
▣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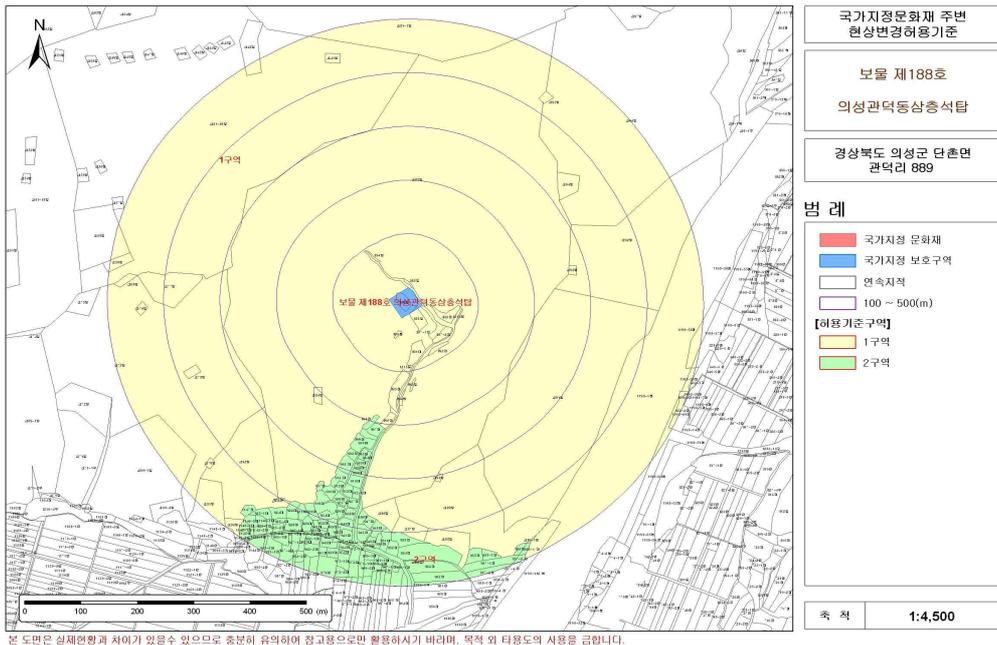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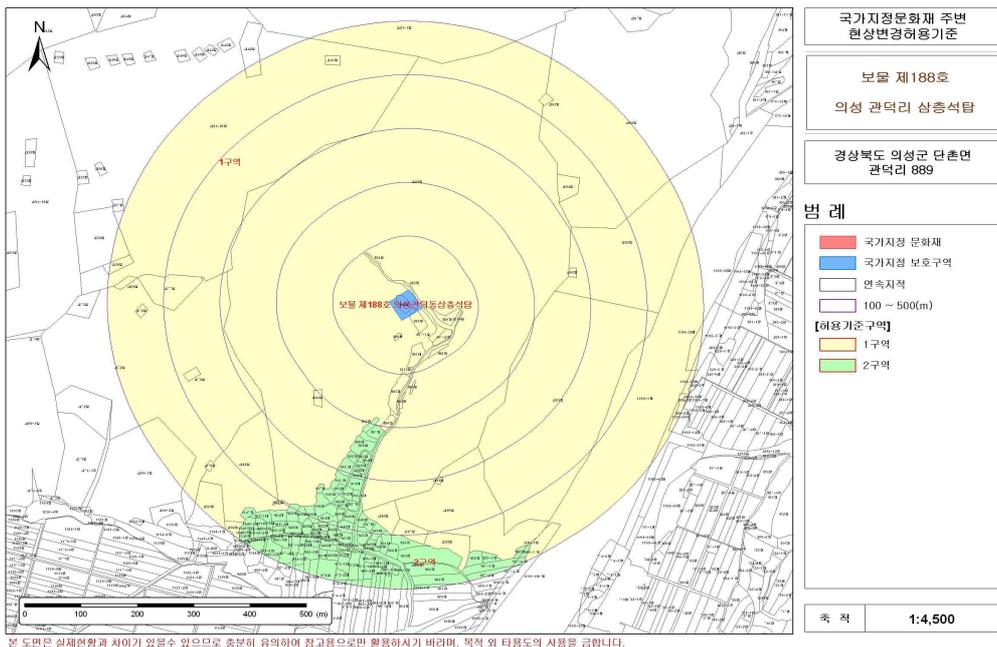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8호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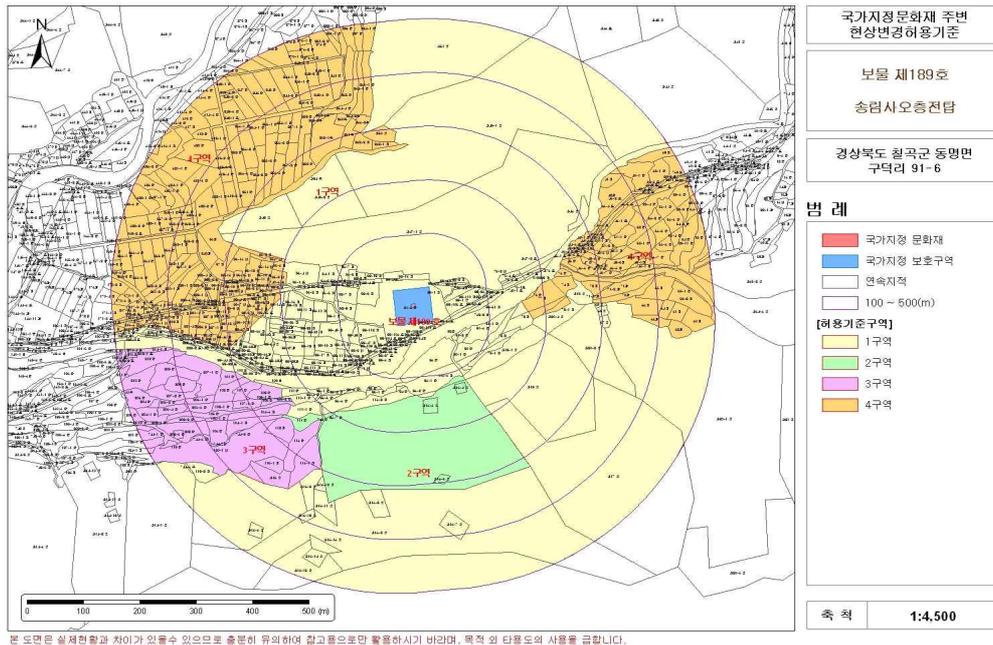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p>○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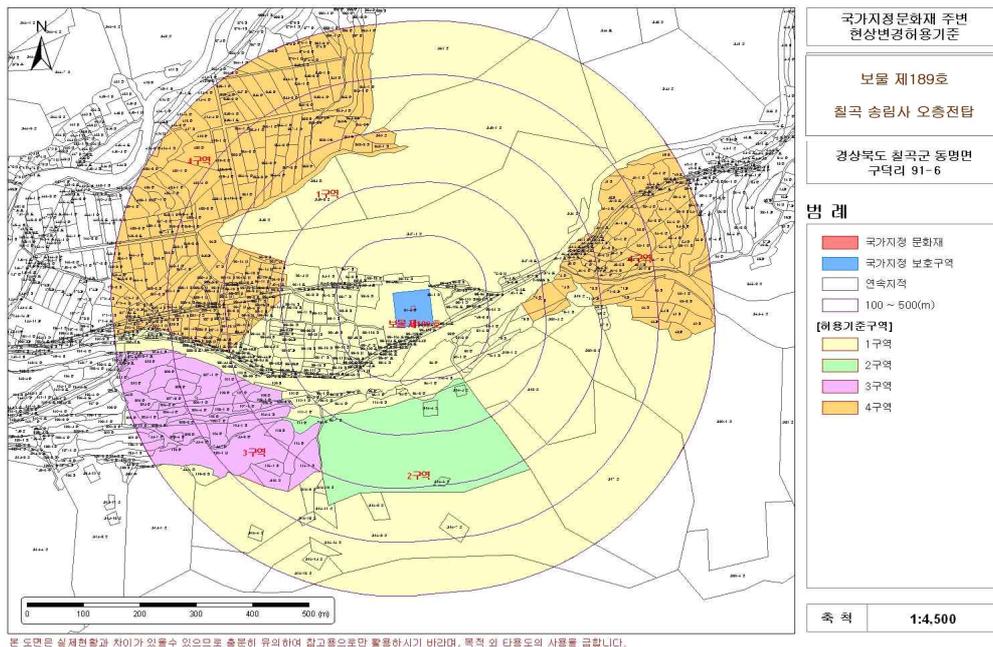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p> <p>○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보물 제189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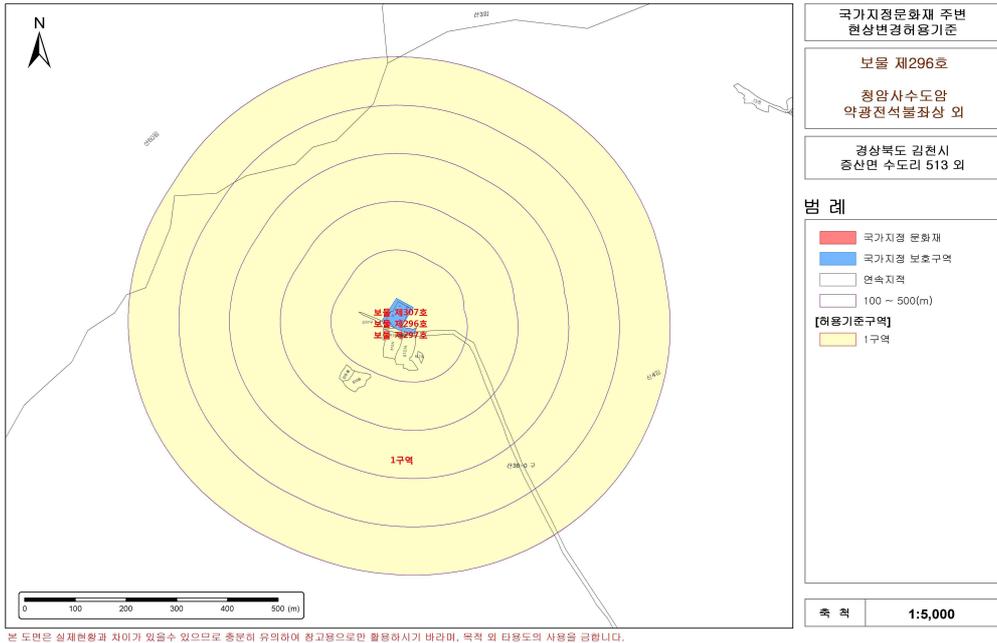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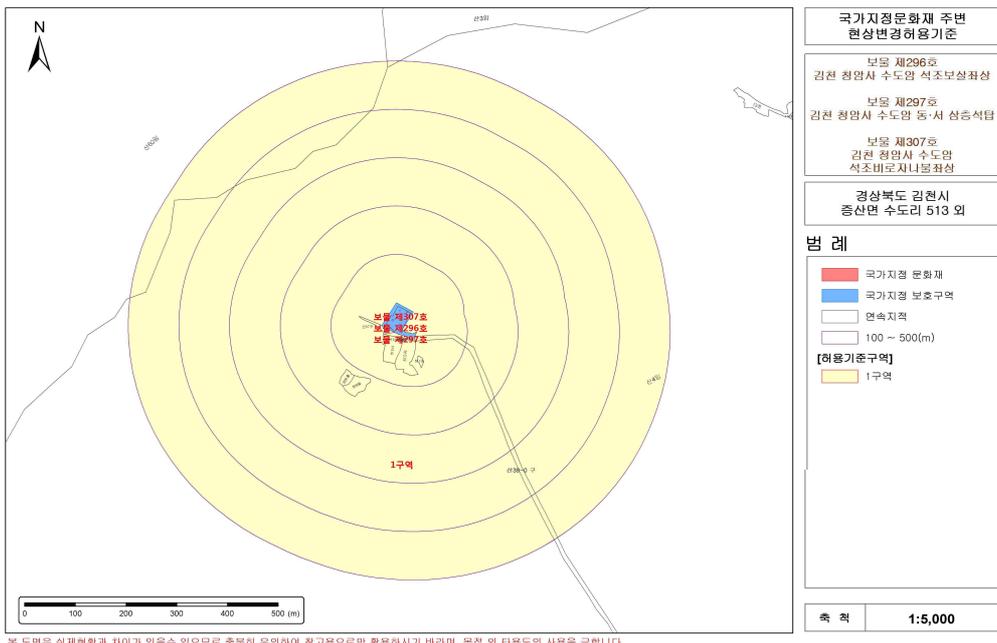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296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29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30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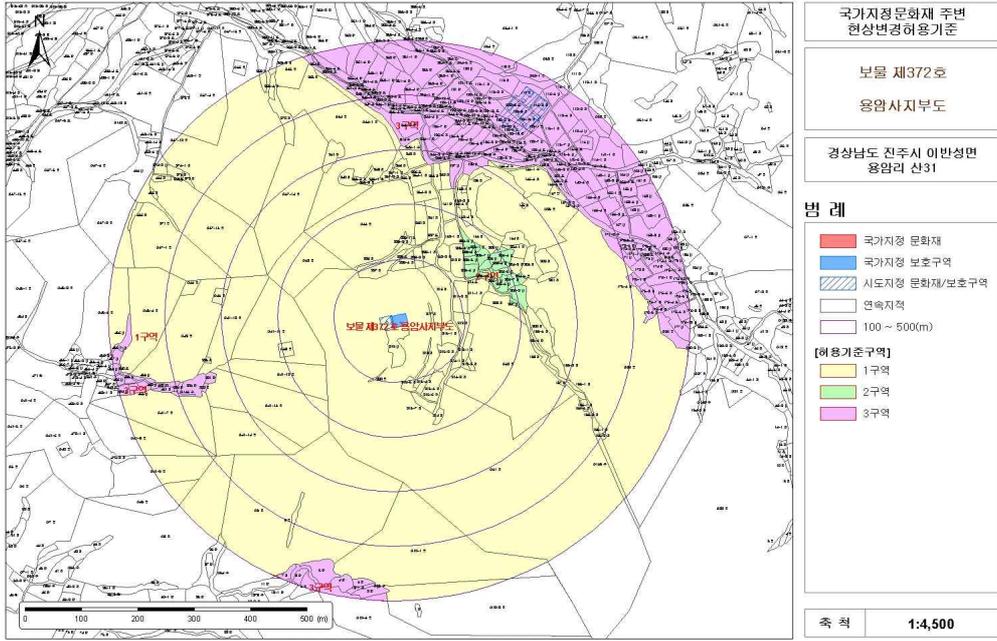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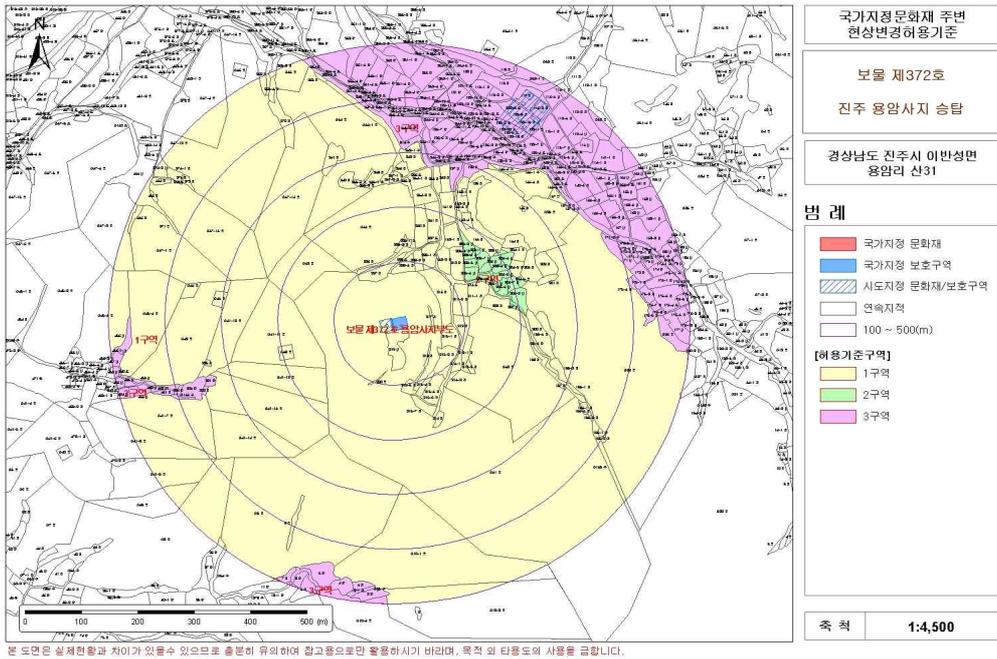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72호 “진주 용암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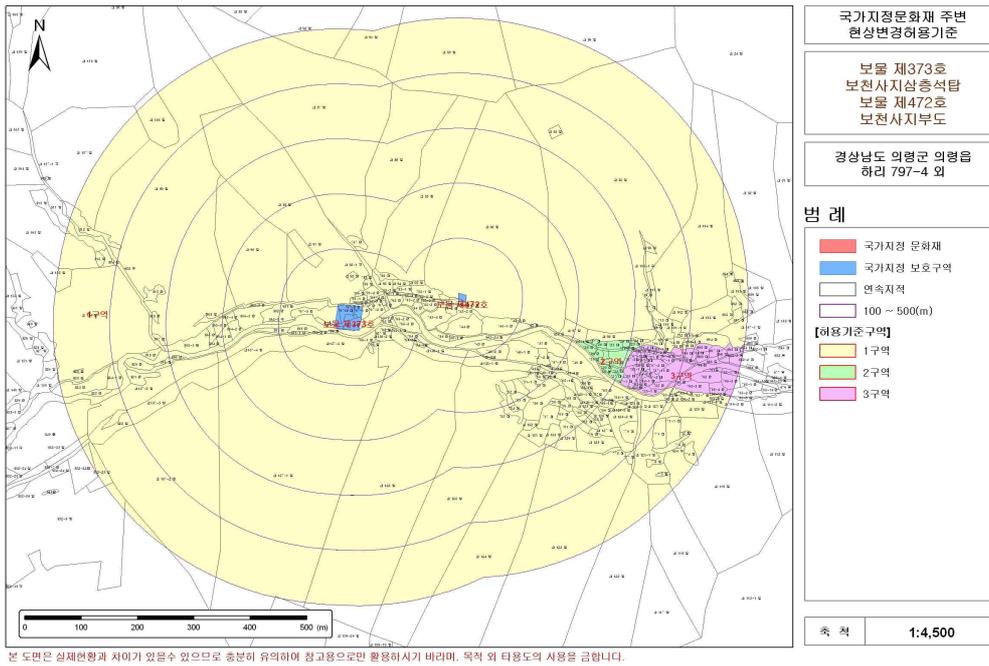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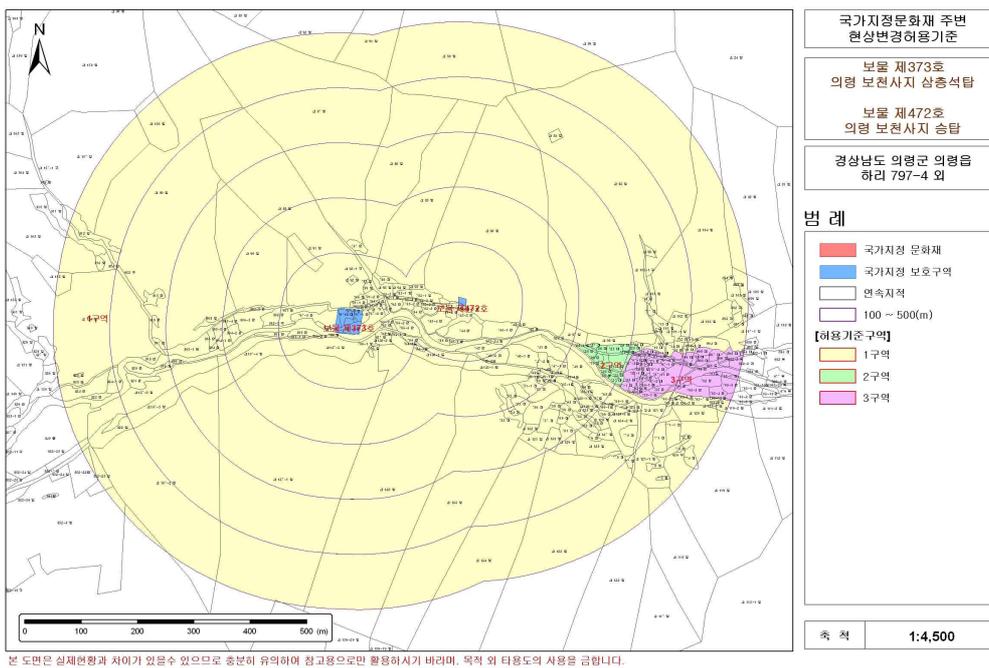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73호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72호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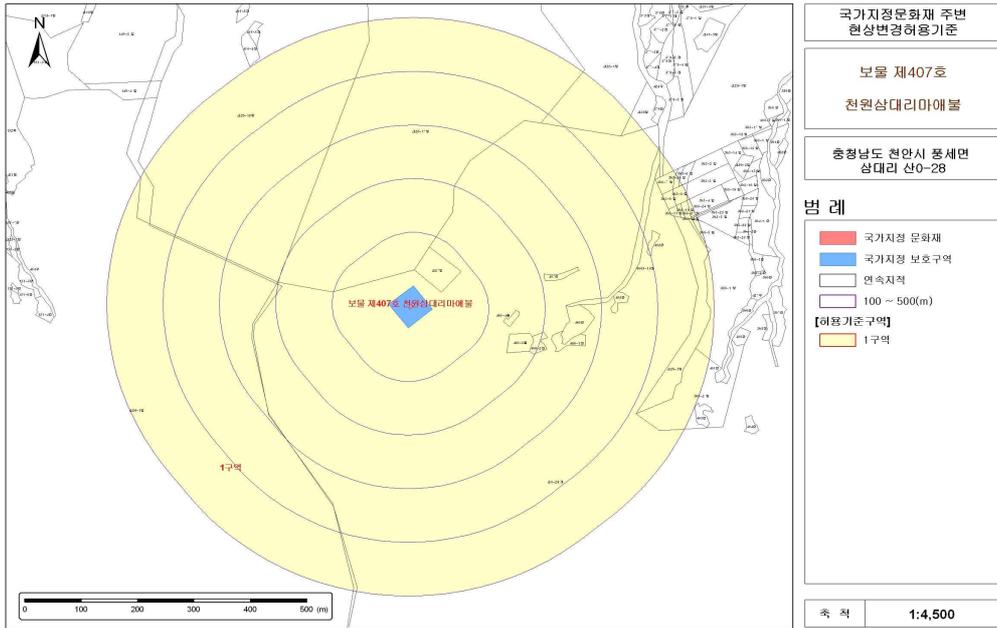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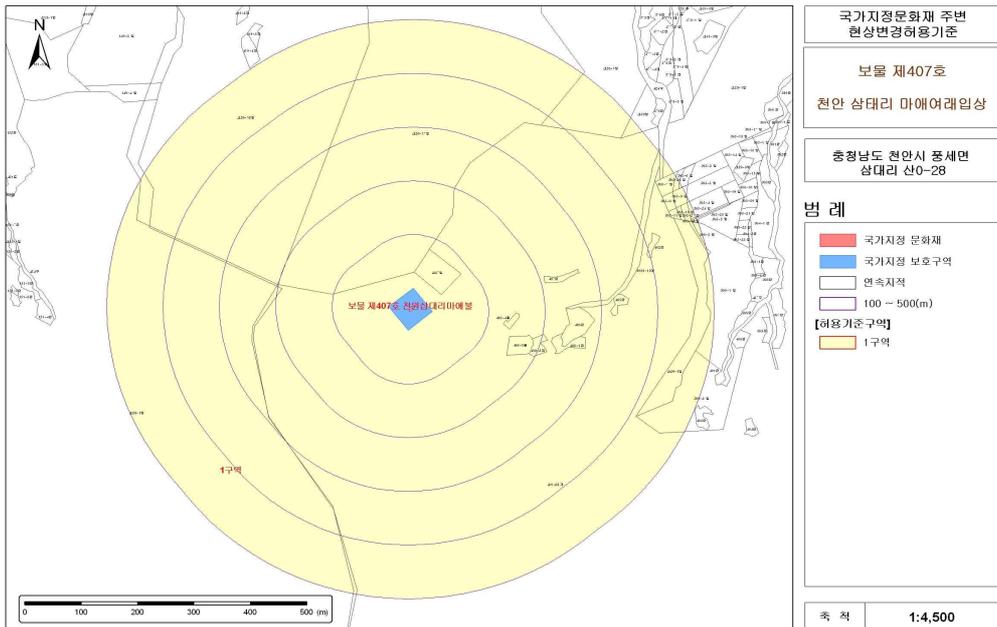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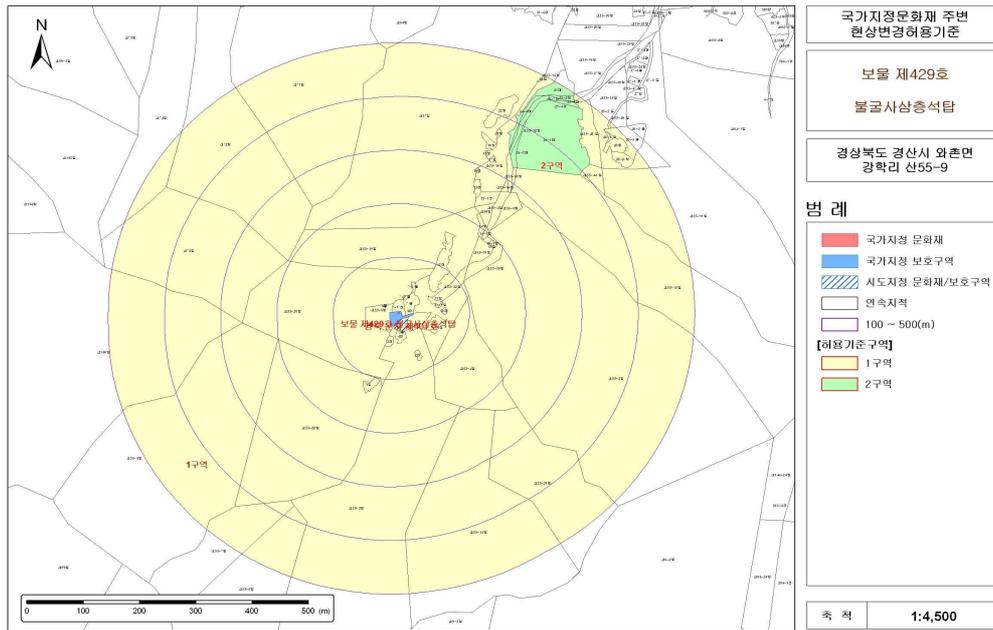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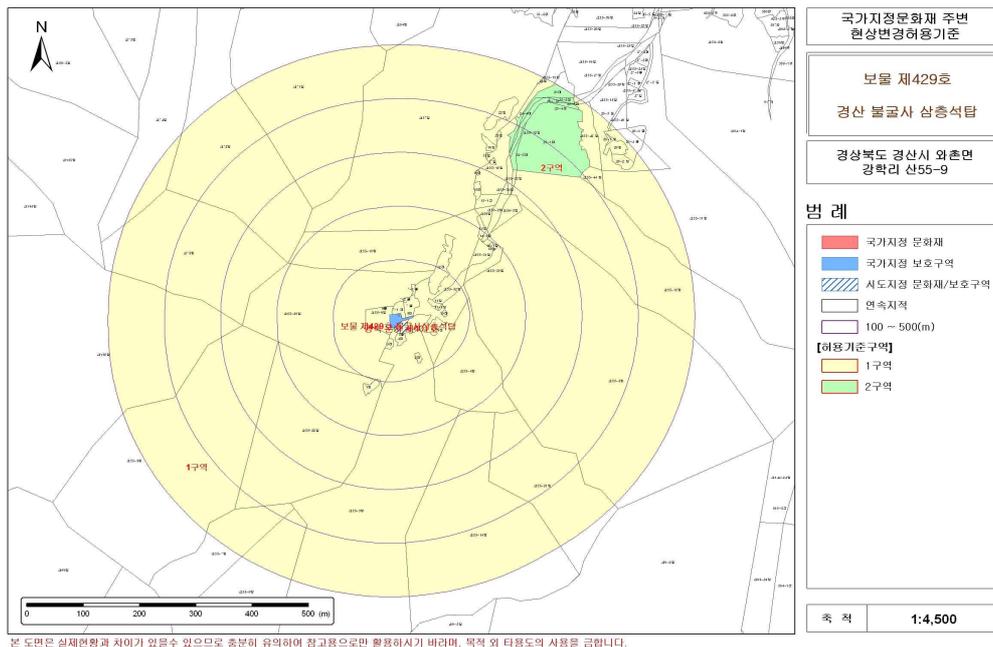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29호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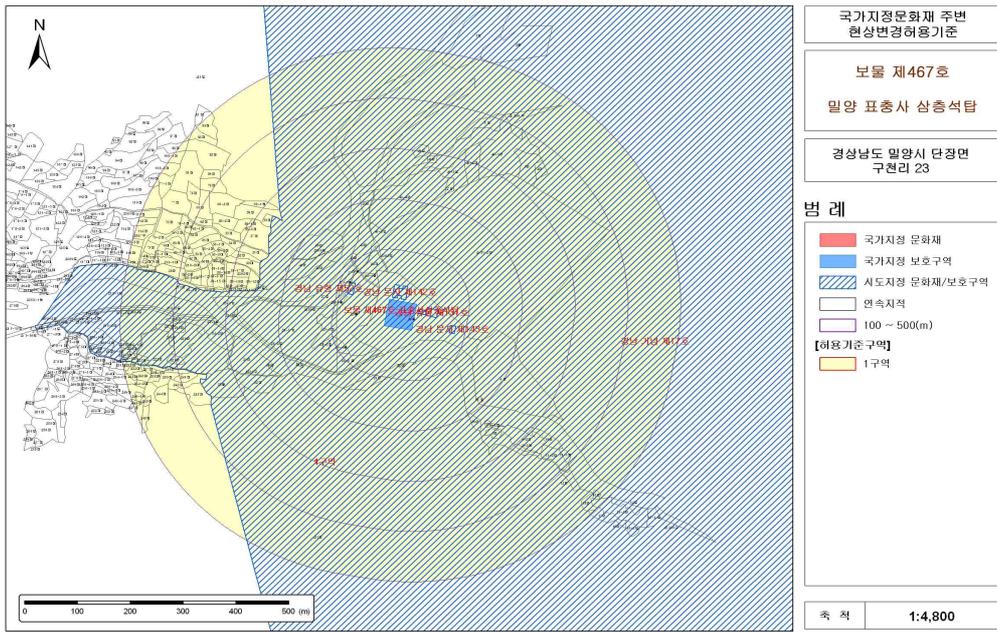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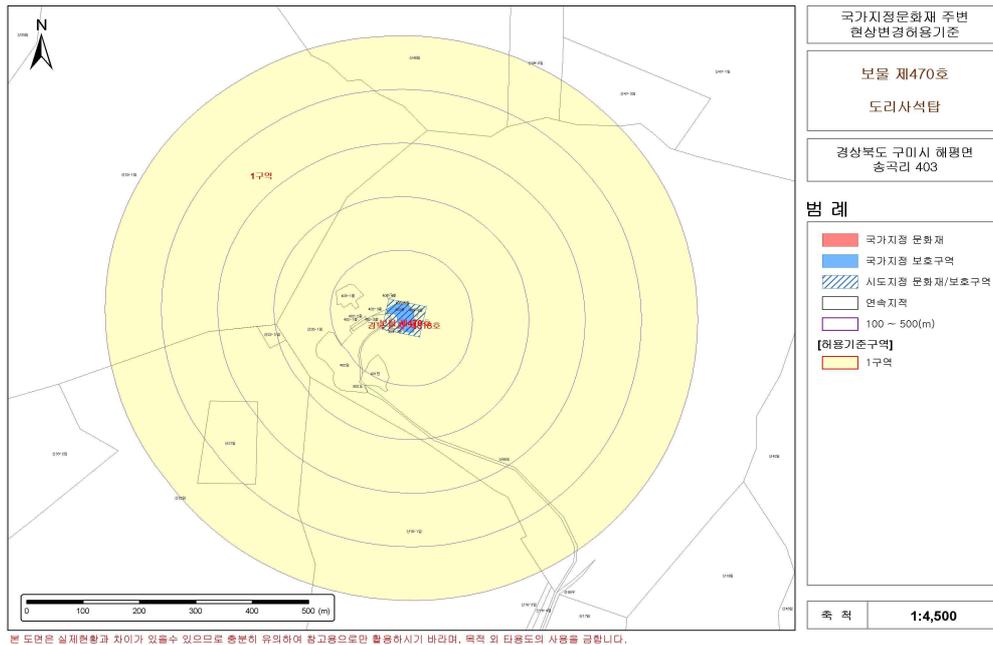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표층사 경내는 제외)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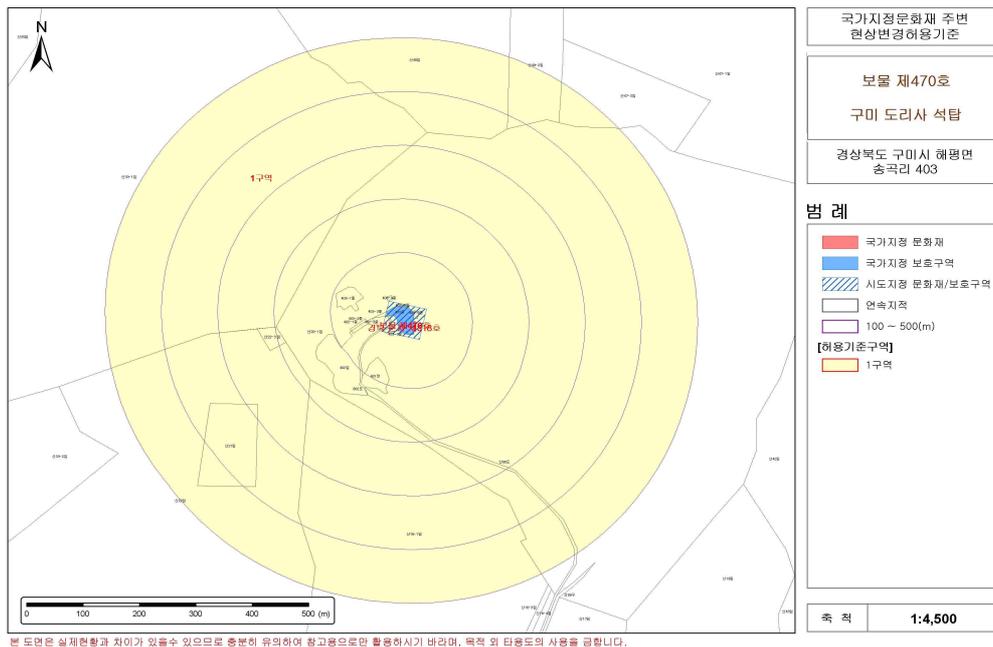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단, 대지에 한하며 그밖에 지목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표층사 경내는 제외)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70호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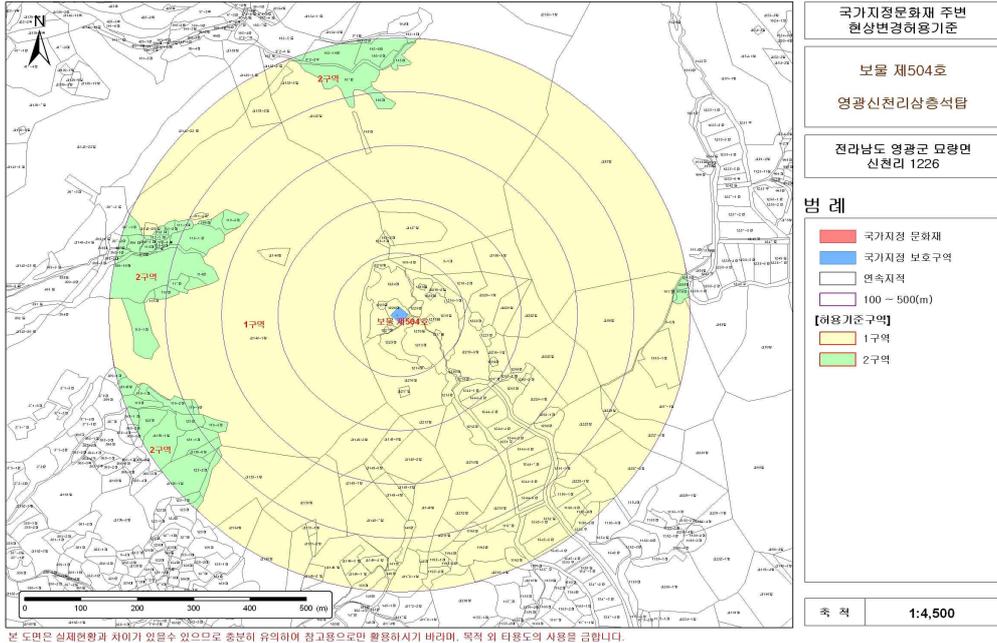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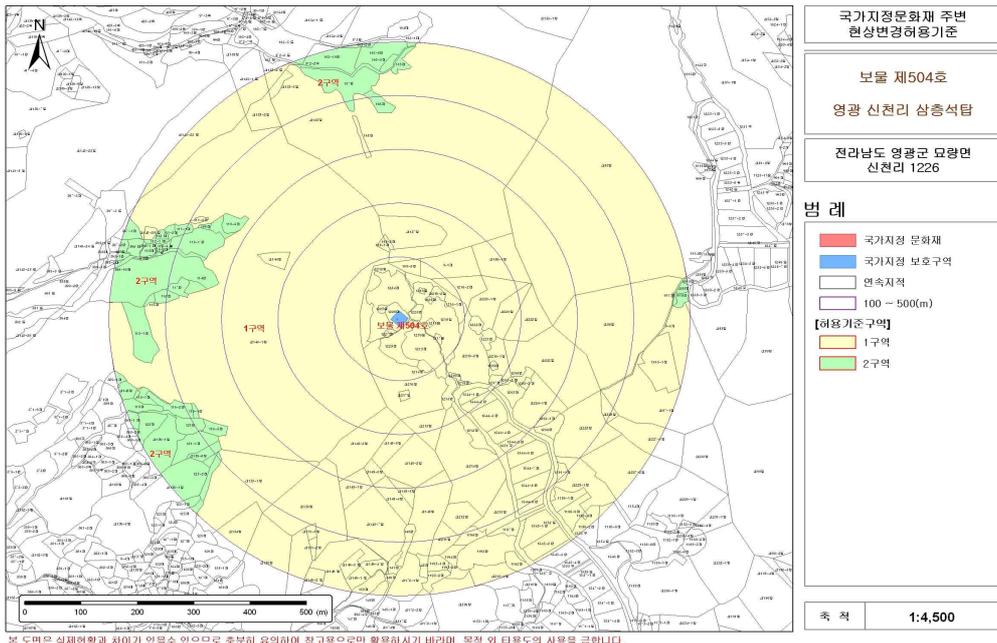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504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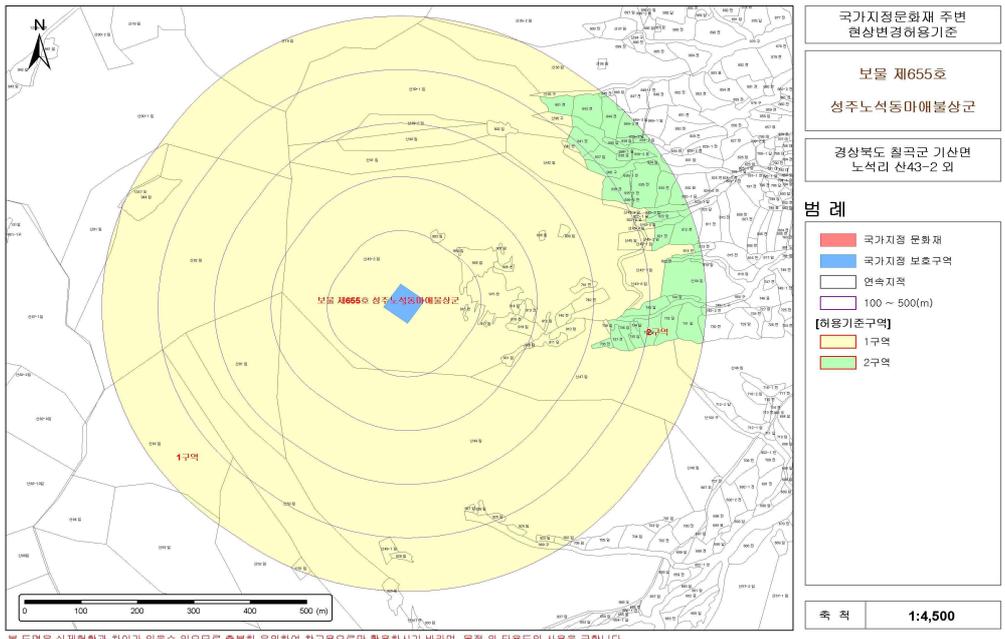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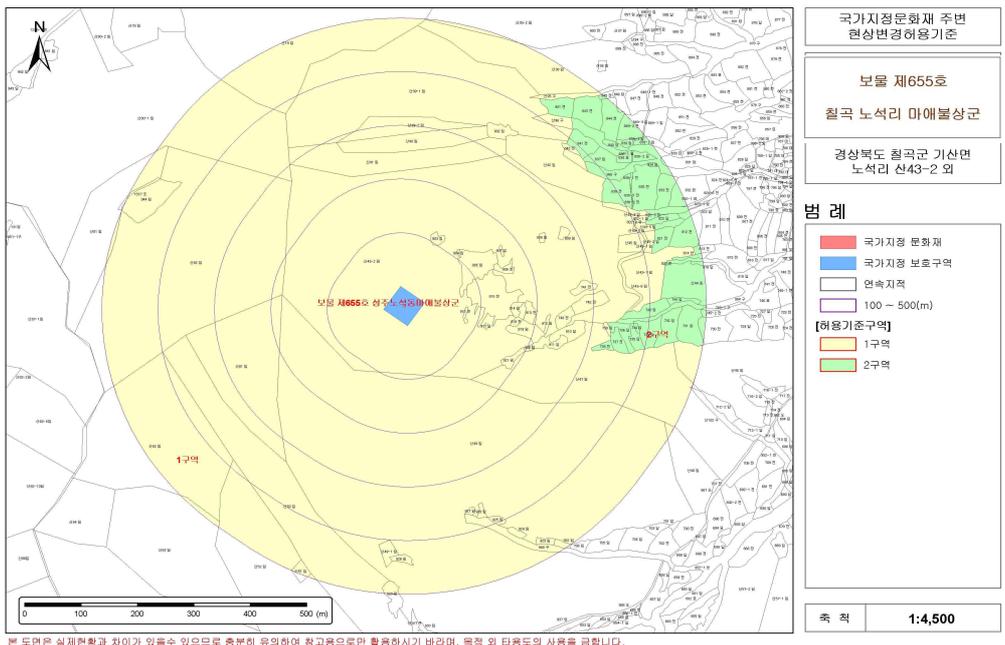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655호 “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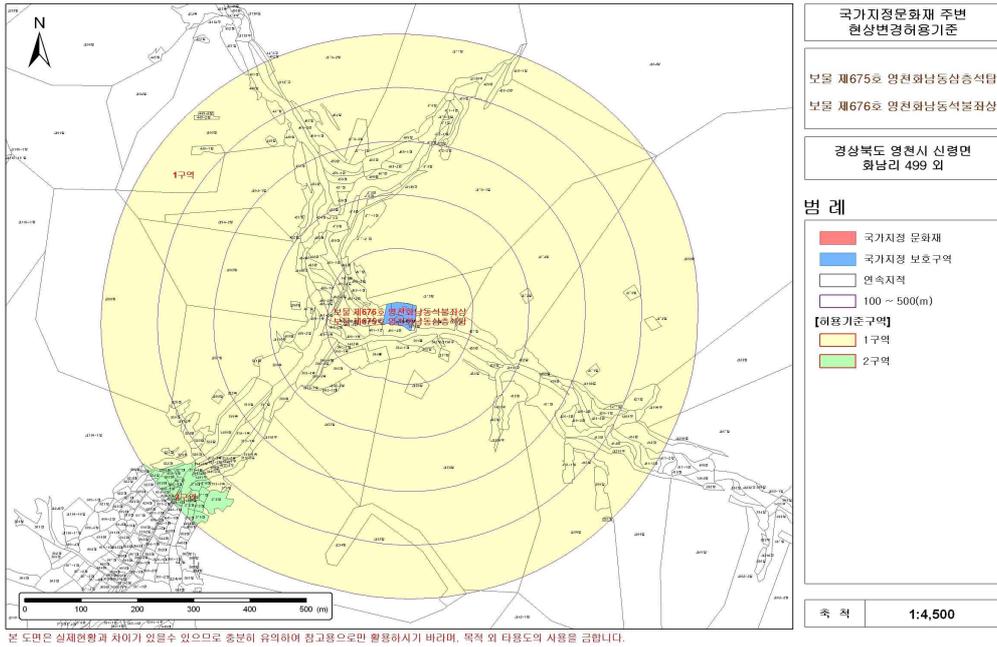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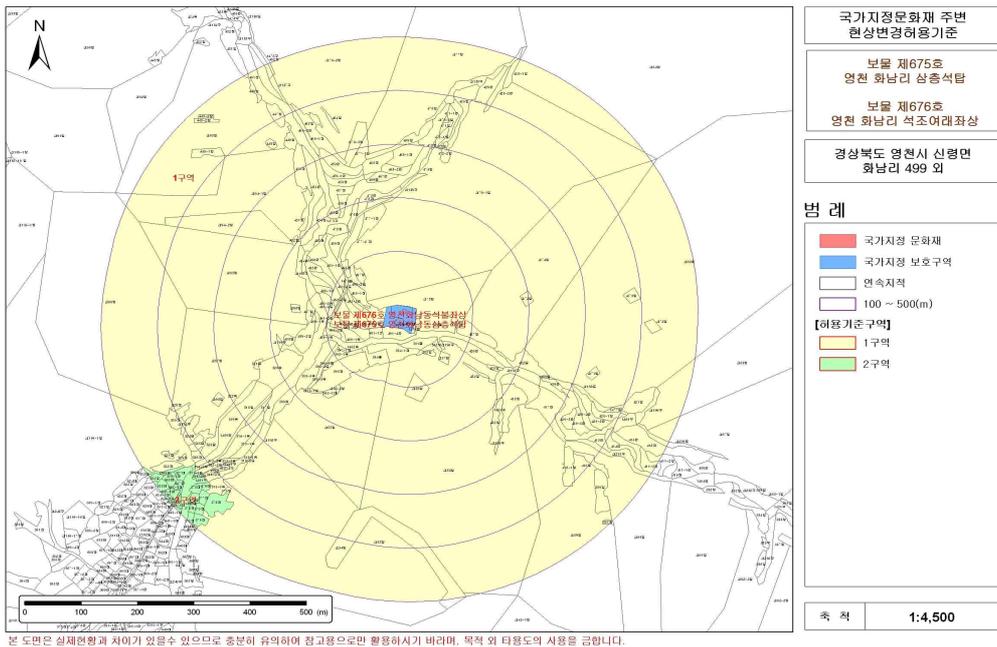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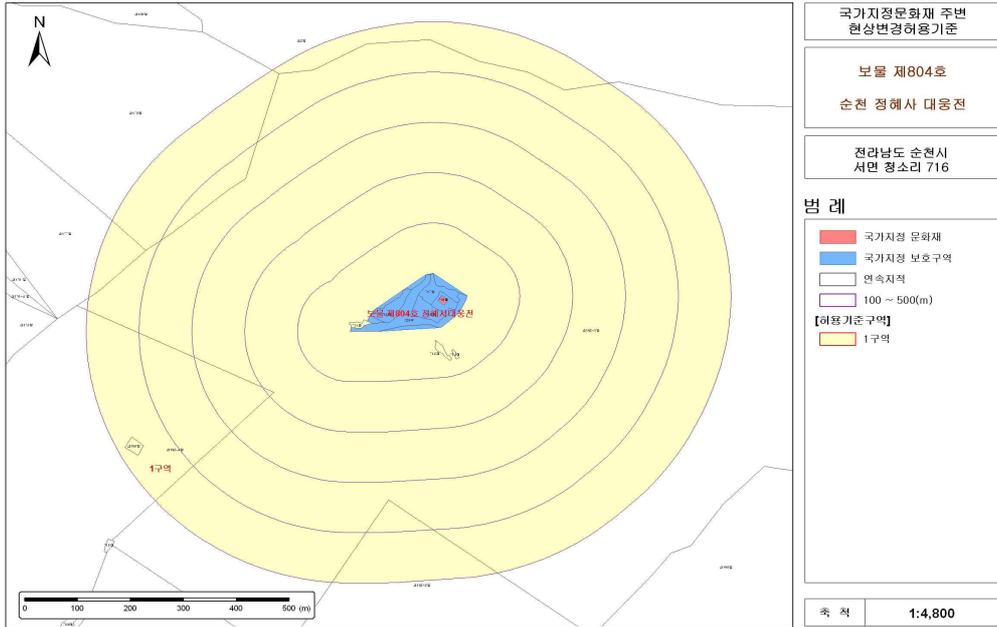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한광사 경내는 제외)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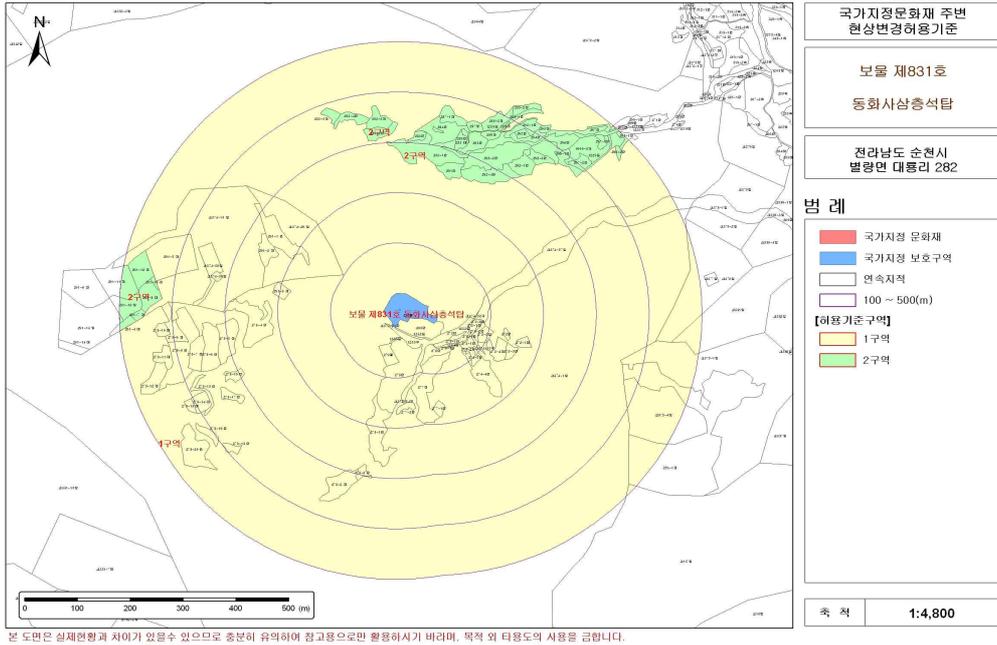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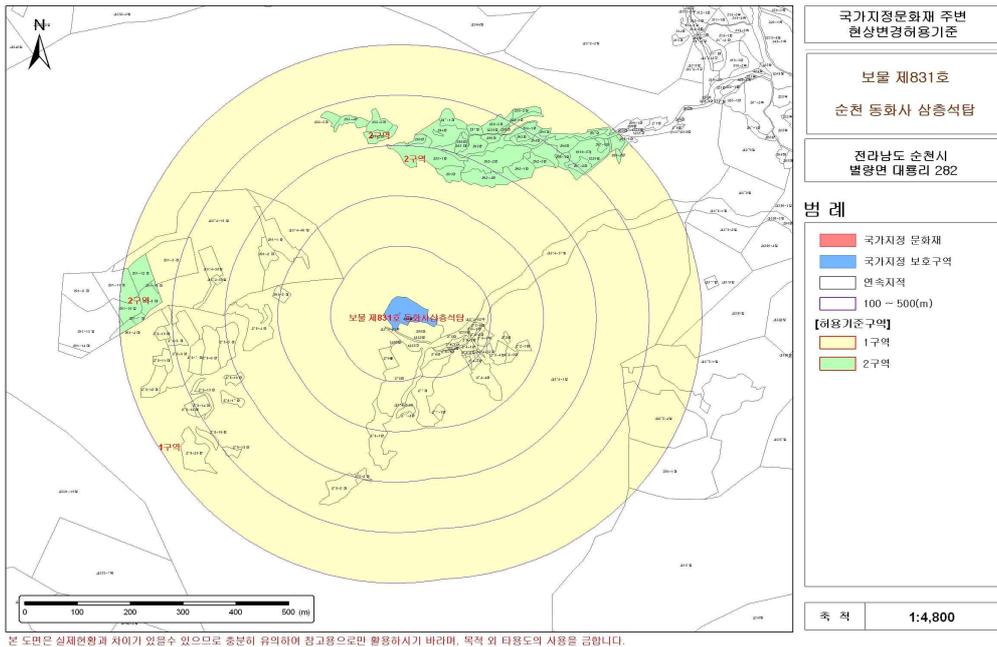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31호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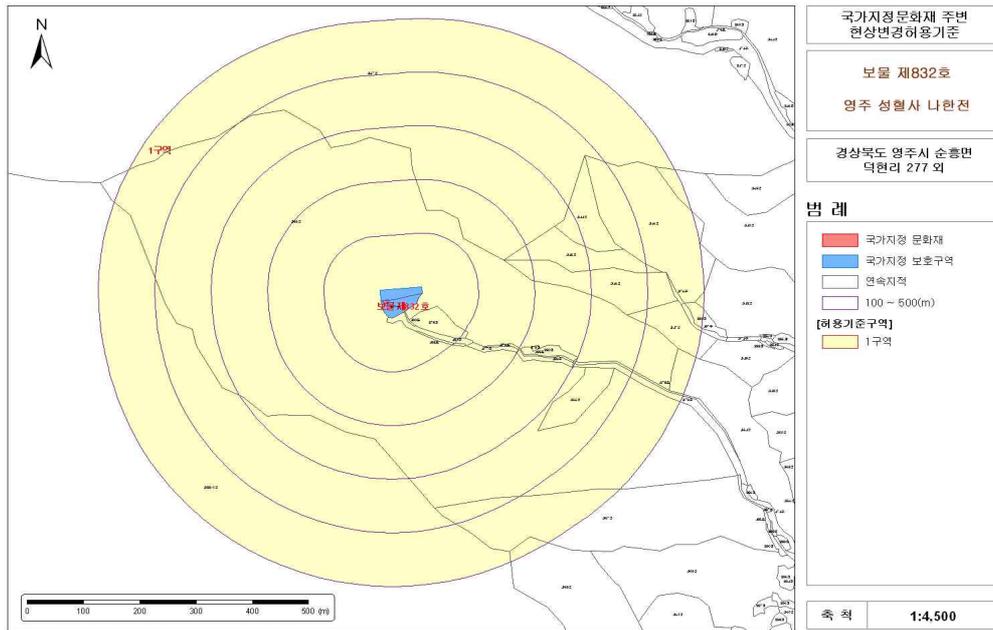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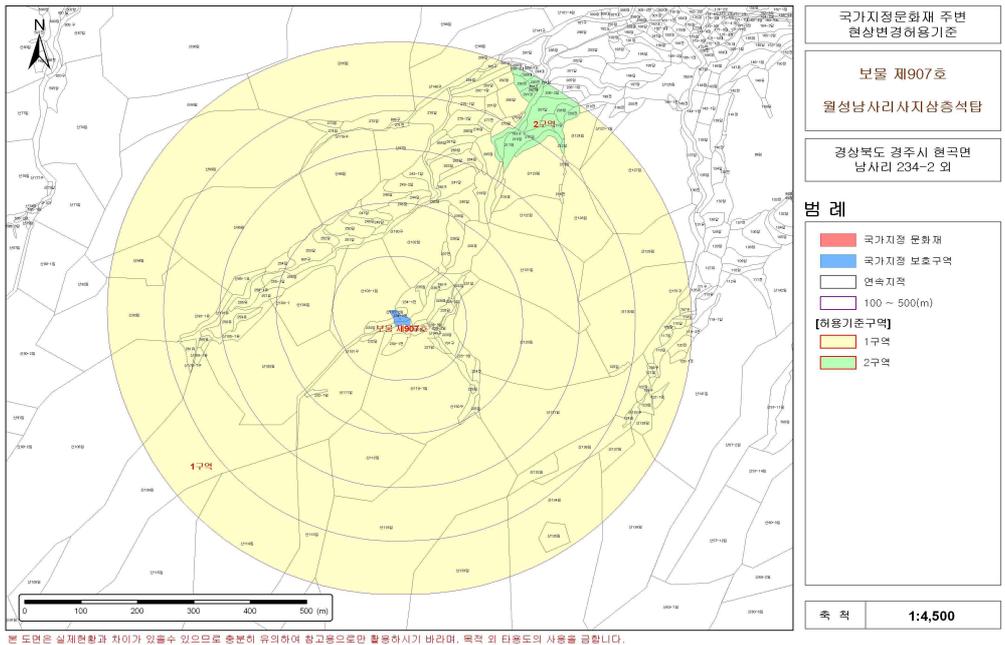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성혈사 경내는 제외)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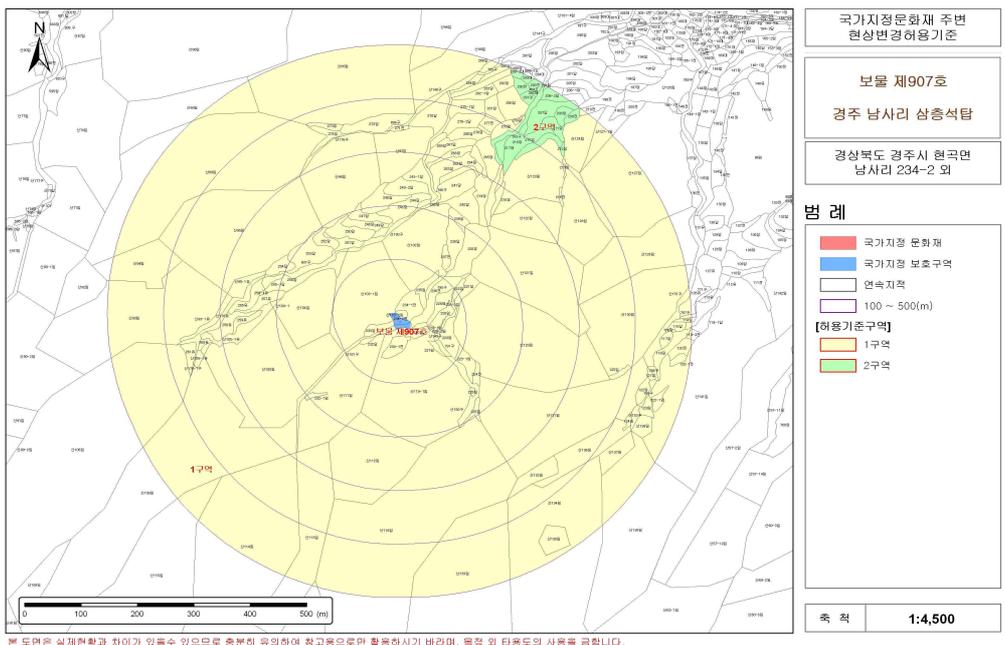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개별심의		
공통사항	<p>○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성혈사 경내는 제외)</p> <p>○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보물 제907호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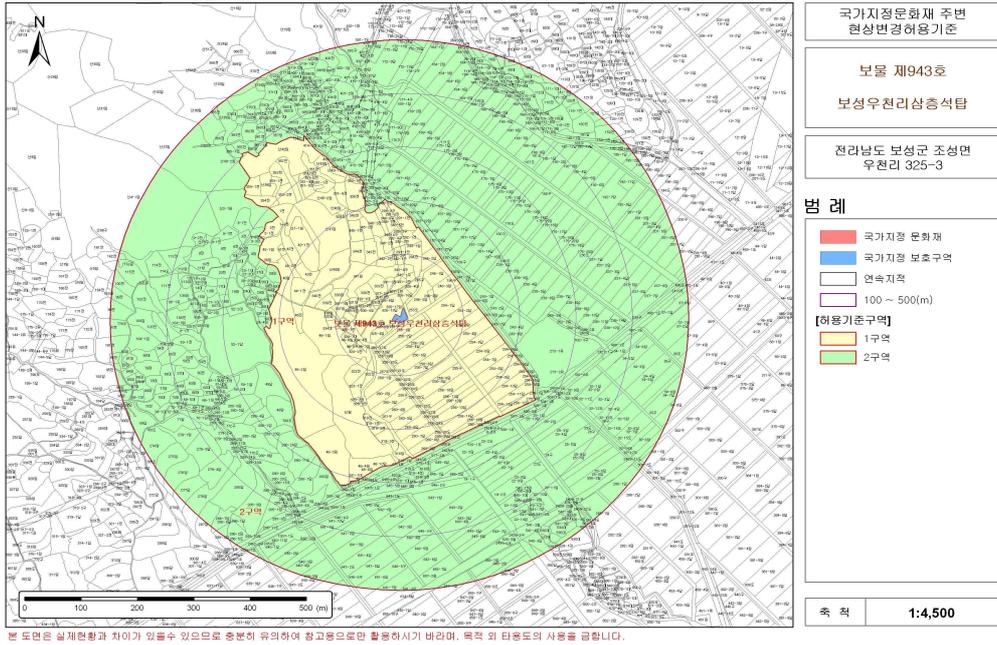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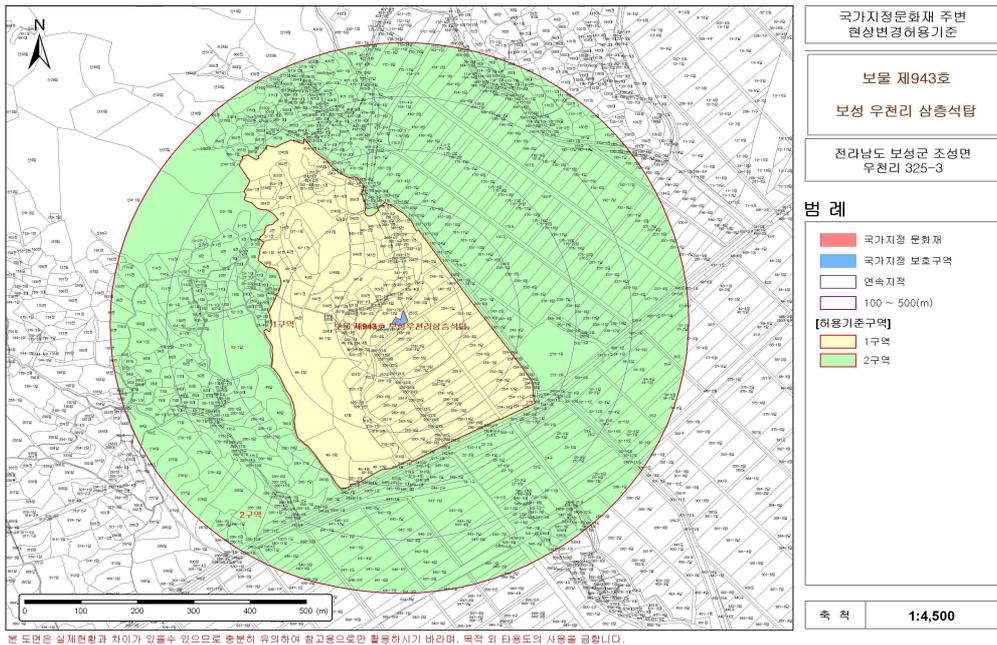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43호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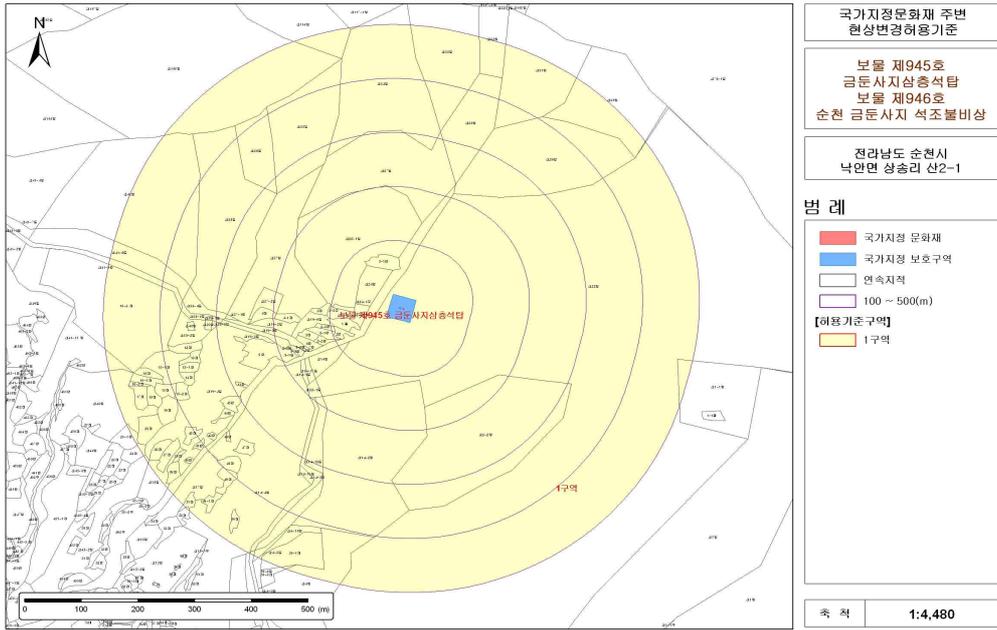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 기존범위 내 개축·재축 가능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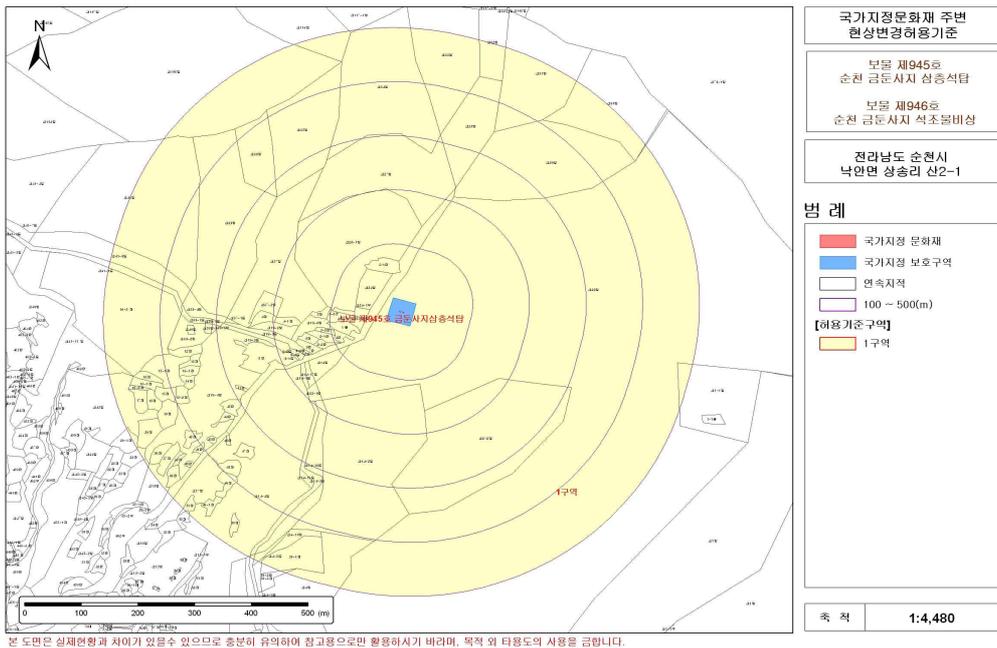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45호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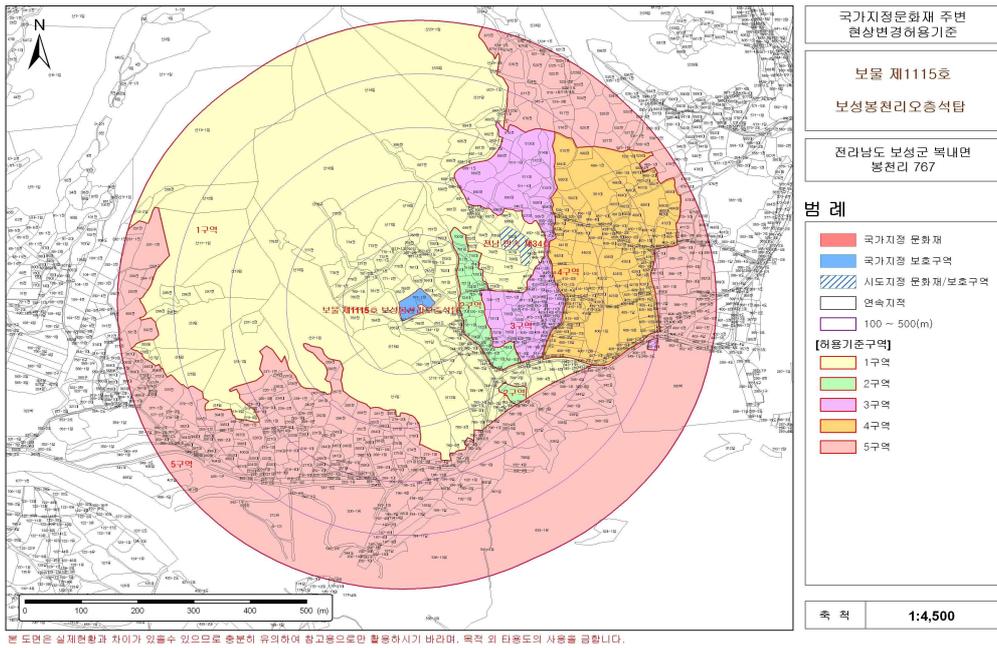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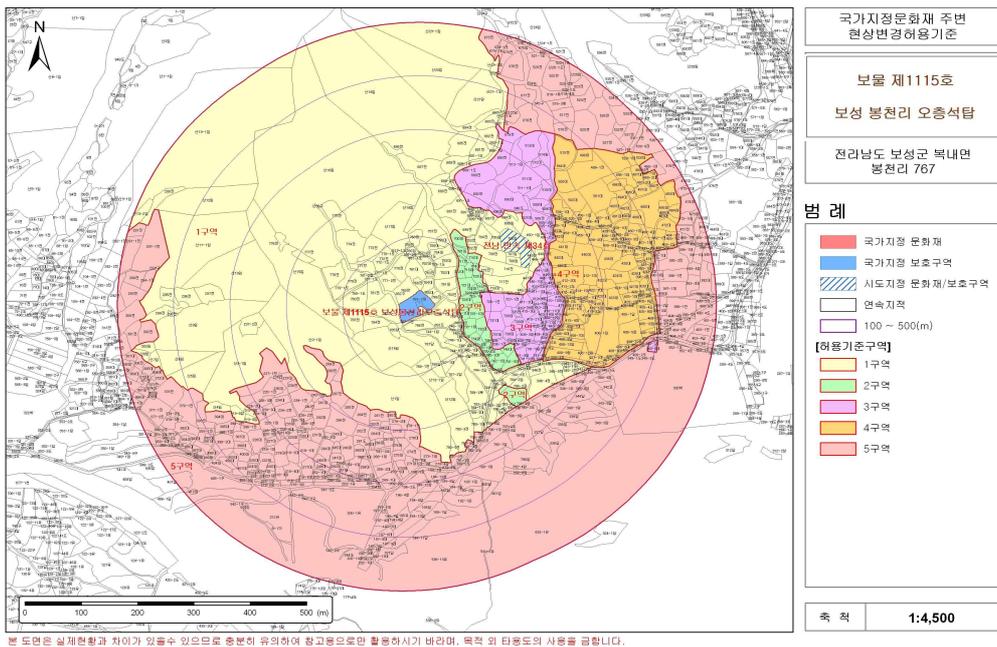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115호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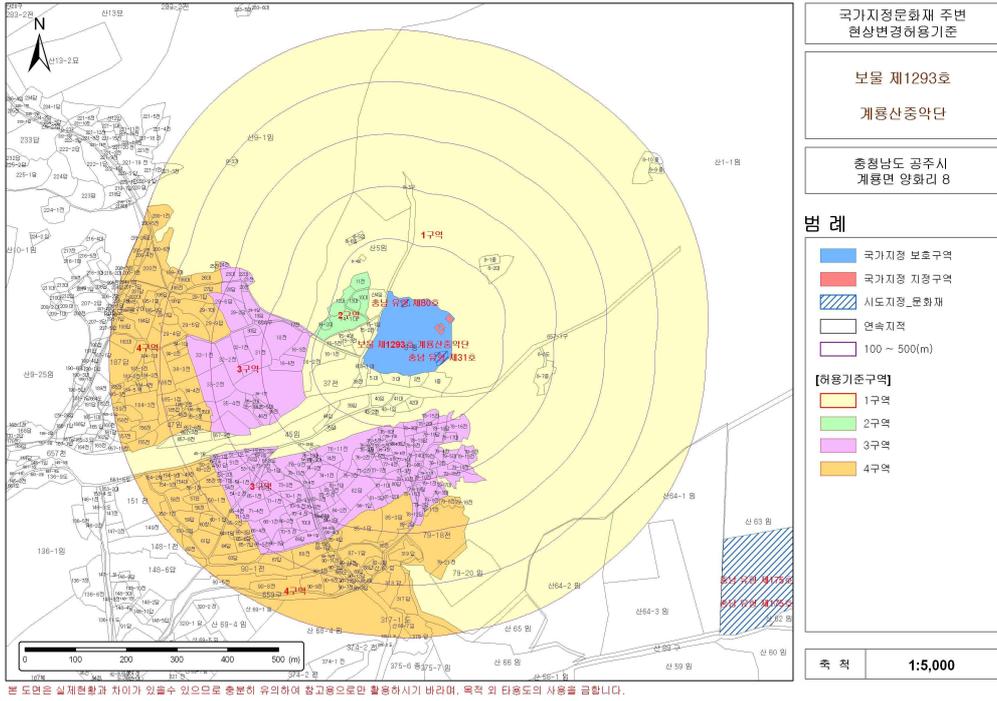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 기존 범위내 개축 가능		
제2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 (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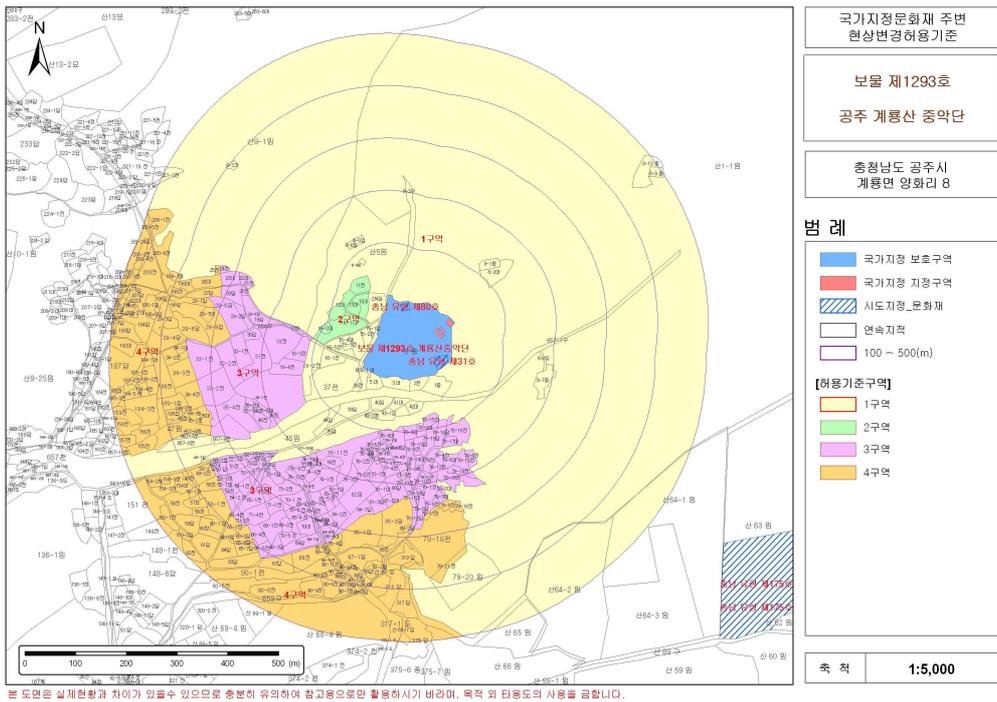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약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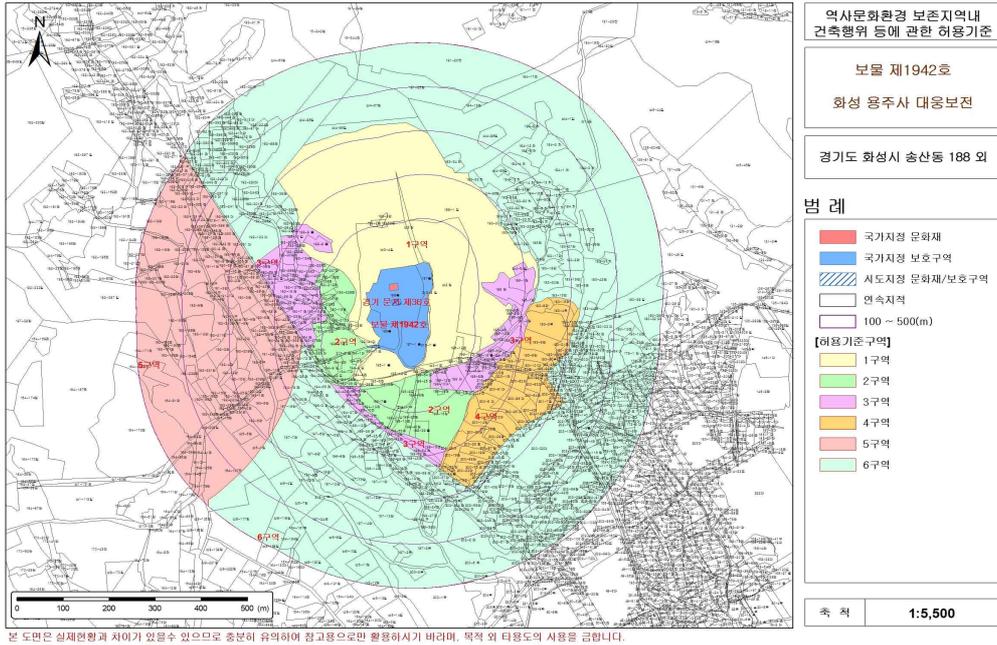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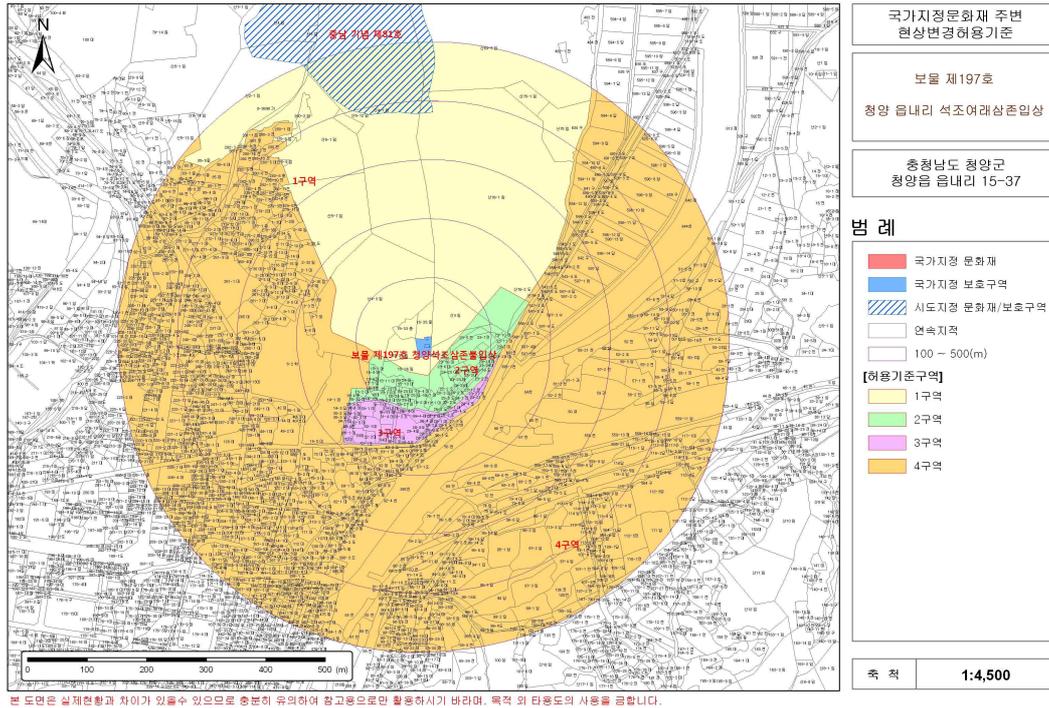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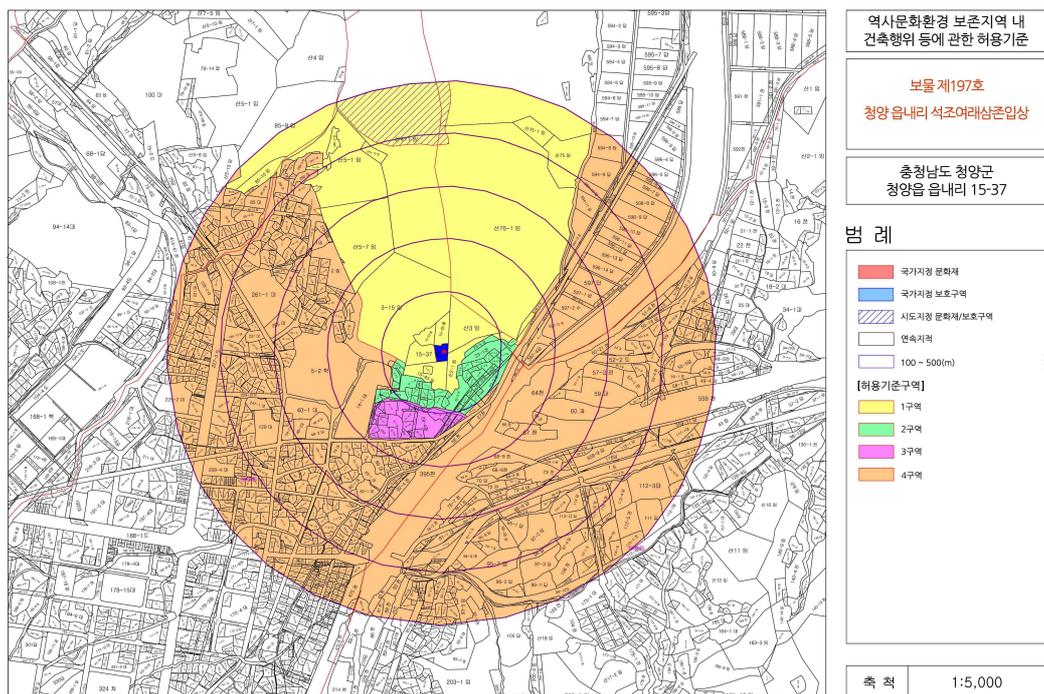
[붙임 3] 허용기준 조정 4건

▣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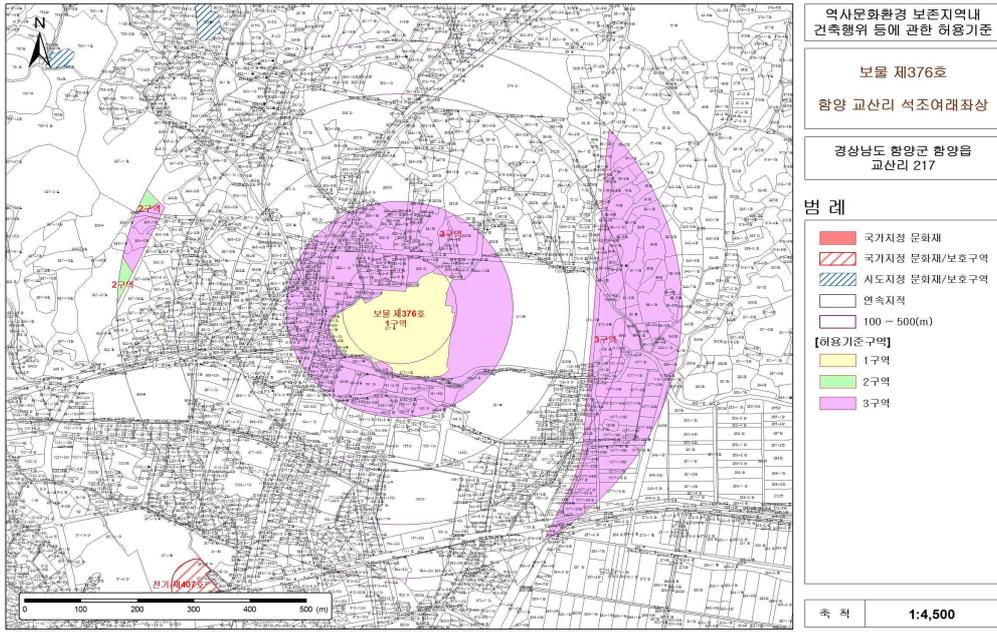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8m(5층) 이하	○최고높이 21m(5층)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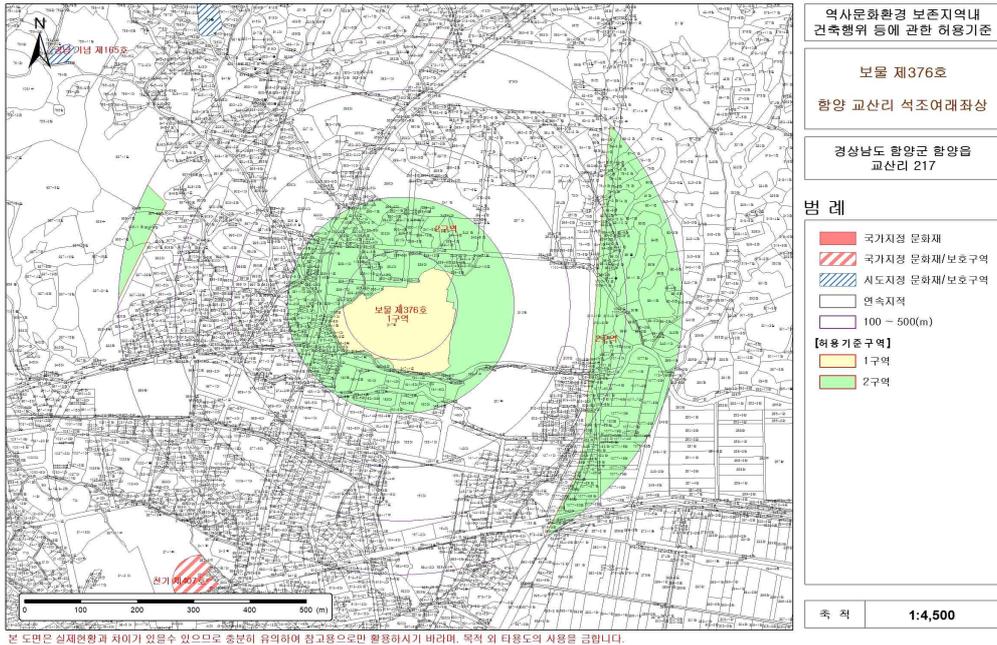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8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범례 표(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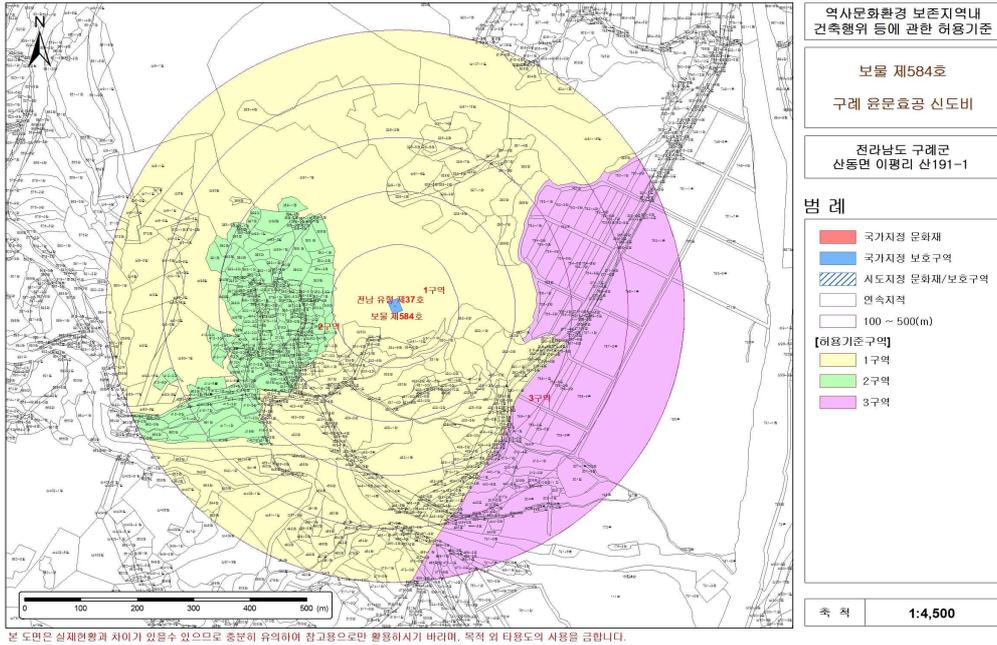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3구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남군묘역)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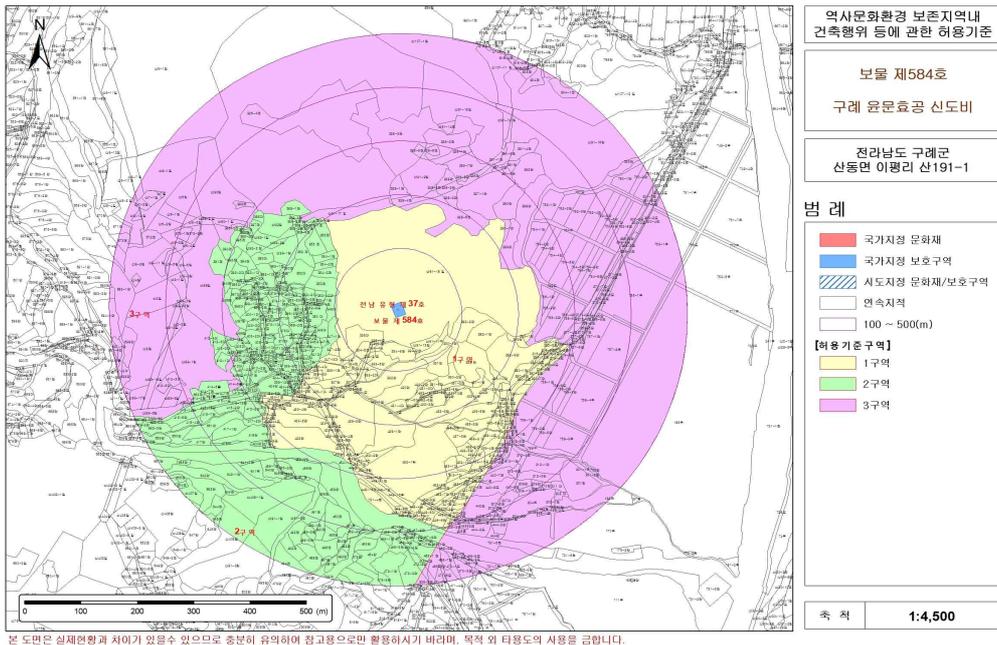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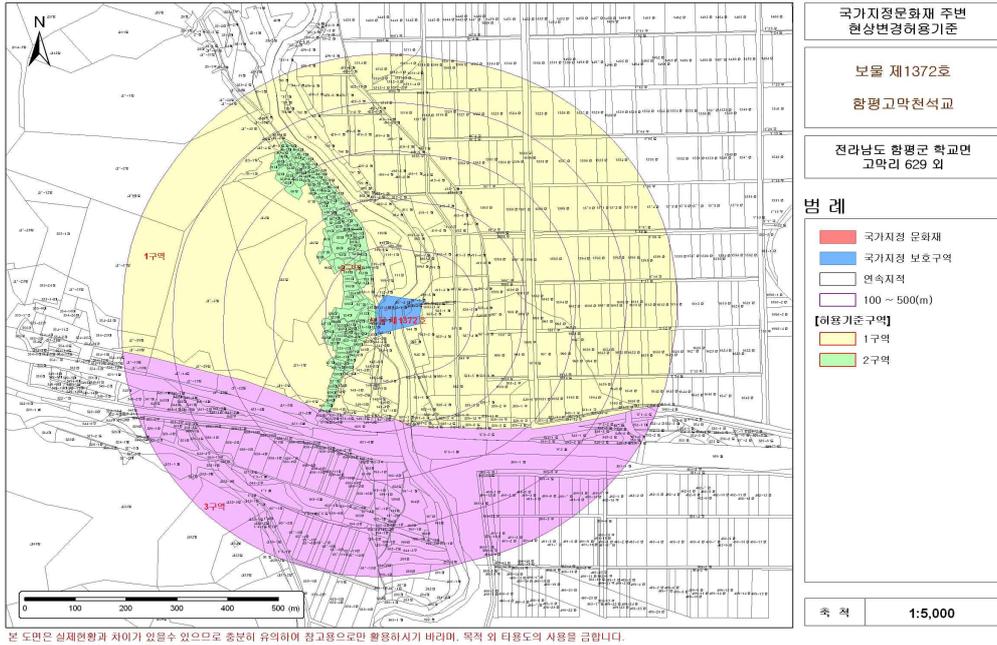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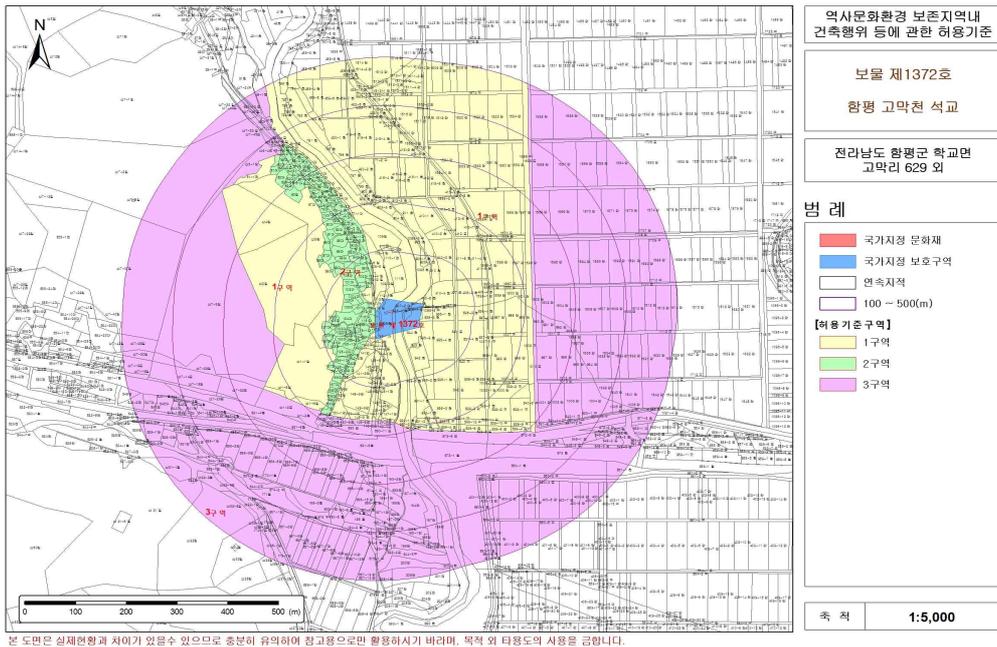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2-013

13.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재검토

가. 제안사항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안)을 재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도 「보물 제738호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0.10.15.) : 보류
- 소위원회 설계자문 후 위원회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38번지, 통도사
 - 지정일 : 1982. 11. 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609-11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부터 570m
 - 사업내용 : 양산 통도사 수장고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2,637.72㎡(3,638.18㎡)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지상1층)

- 건축양식 / 층고 : 자연지형을 반영한 랜드 스킵 양식 / 9m
- 참고사항 : 기존 불법건축물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조성
 - * 불법건축물 현황 : 된장판매소(137.72㎡), 운영사무실(38.31㎡)
- 건립 예정 수장고 문화재 이전 개요
 - 통도사 소장 문화재 현황
 - 지정문화재 : 80건 1,090점(국보 1건, 보물 26건, 시도지정 40건, 문화재 자료 13건)
 - 비지정문화재 : 지류문화재 28,982점 등 38,916점
 - 건립 예정 수장고 이전 문화재 : 불화, 목판류 등 1,470점

14.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속초시 소재 보물 제1981호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속초시 소재 보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안과 관련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 소재지 :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지정일 : 2018. 06. 04.

(2) 사업내용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흥사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실시한다.
 - 증개축이 아닌 기존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 사업예산 : 200,000천원(국비 140,000천원, 지방비 60,000천원)
 - ※ ’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전통지 : 신흥사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1차) 1,000,000천원(국비 700,000천원, 지방비 300,000천원)
- 사업위치 :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세부내용

구분		기존	리모델링 안	비 고
선원	규모	정면11칸, 측면6칸, ㄷ자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396.0m ² /396.0m ²	좌동	
	구조	한식목구조	좌동	
	최고높이 /층수	10.29m/지상1층	좌동	
	지붕·처마	팔작지붕, 1출목 2익공·겹처마	좌동	
	기타	기존 마루 철거, 정면 온돌마루설치 목재차폐시설(L=70.8m, 무문관 기능) 설치 방구조 변경에 따른 창호 변경 등		
법 검 당	규모	정면7칸, 측면3칸, 一자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173.21m ² /346.42m ²	좌동	
	구조	지하1층-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층-한식목구조	좌동	
	최고높이 /층수	11.66m/지하1층·지상1층	좌동	
	지붕·처마	맞배지붕, 초익공·겹처마	좌동	
	기타	석재난간철거 후 목재난간설치 지하층 퇴칸 회랑 및 우물반자 신설 방구조 변경에 따른 창호 변경 등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2-015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온양 소로 1-451호 확포장 공사 등 허가신청 26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6건	원안가결 19건 조건부가결 4건 부결3건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충남 아산 (○○○)	<input type="checkbox"/> 온양 소로1-451호 확포장공사 ○ 위치 : 아산시 읍내동 349-7번지 일원 * 제4구역(문화재에서 372m 이격) ○ 내용 : 도로 확포장공사 - 규모 : 소로1-451호선(L=134m, B=10m) - 토공 : 흙깎기 343㎡, 흙쌓기 543㎡, 순성토 333㎡ - 배수공 · 우수관로(D600) 128m · 우수받이(410X510X940) 12EA · 보차도경계석(200X250) 236m · 도로경계선(150X150) 112m -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 1,124㎡, 보조기층 419㎡, 도로포장 419㎡	원안가결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 (○○○)	<input type="checkbox"/>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 위치 : 강화군 화도면 홍왕리 산3번지 외 3필지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760m 이격) ○ 내용 : 숲가꾸기 작업 1식 - 필지면적 : 95,251m ² - 작업면적(구역내) : 38,223m ² - 제거본수 : 728본 - 제거수종 : 신갈, 기타활엽수, 상수리, 아까시, 소나무, 굴참나무, 리기다 등 - 필요성 : 산불, 병충해, 태풍 등 예방	원안가결	'20.10.27
보물 제79호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및 보물 제540호 홍천 패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강원 홍천 (○○○)	<input type="checkbox"/> 홍천성당 주변정비(2차) ○ 위치 :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05번지 외 4필지 * 제2, 3구역(보호구역에서 76m 이격) ○사업내용 - 목적 : 법면정리, 신도들 통행편리 및 휴식공간 확보 - 경비 : 410,600천원(자부담)	원안가결	'20.10.27
구분	부결안('20.9월)	신청안		
보강토 옹벽	H=0.1~7.7m L=340.0m A=1,088.5m ²	H=0.1~7.7m L=290.0m A=958.9m ²		
토공	순성토=5,146m ² 법면보호(평떼) =1,076m ²	순성토=4,929m ² 법면보호(평떼) =842m ²		
도로 포장	L=150.0m B=5.0m A=1,346.0m ²			
* '20년 9월 자체검토회의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옹벽 높이 최소화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국보 제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구례 (○○○)</p>	<p>□ 연곡사 심우암 내 요사채 건립 및 석축 정비</p> <p>○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26</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2.6m, 승탑에서 197m 이격)</p> <p>* '17년 제3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 부결</p> <p>- 위치 부적절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p> <p>* '17년 5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 보류</p> <p>- 현지조사 후 재검토</p> <p>* '17년 6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 조건부 가결</p> <p>-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반영 선행</p> <p>* '18.01.31. 자체회의 결과 : 조건부허가</p> <p>-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p> <p>○ 내용 : 요사채 1동 건립 및 석축정비</p> <p>- 요사채</p> <p>· 연면적 : 106㎡</p> <p>·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팔작지붕</p> <p>·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7.39m</p> <p>- 석축정비</p> <p>· 지반정비 : 마사토 포장 A=1,980㎡</p> <p>· 석축정비 : L=223m, H=0.5~4.2m</p> <p>· 배수시설 : PE우수관, 집수정 및 오·우수 받이</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0.27</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172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문경 (○○○)</p>	<p>□ 봉암사 안길 포장공사</p> <p>○ 위치 : 문경시 가운데 읍 원북리 625 외</p> <p>*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6m 이격)</p> <p>○ 사업내용</p> <p>- 황토포장 및 배수로 설치(A=385㎡)</p> <p>· 황토포장(T=20cm) 320.6㎡,</p> <p>수로관(300X300) 138m</p> <p>· 트렌치측구(300X300) 6m, 우수집수정 7EA</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0.2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및 보물 제2069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p>	<p>경북 영양 (○○○)</p>	<p>□ 지방도920호선(현3리) 인도설치공사 ○ 위치 :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 일원 * 제1·2구역(문화재에서 169m 이격) ○ 내용 : 도로 확포장공사(B=5~6m) L=1,280.5m - 배수관(D400) L=862m, 우수받이 92개소, 집수정 4개소 - L형측구 819m, J형 측구 71m, L형옹벽 95m, 식생옹벽블록 10m - 아스콘포장 754㎡, 콘크리트포장 73㎡, 보도블록포장 1,584㎡</p>	<p>원안가결</p>	<p>‘20.10.27</p>
<p>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및 보물 제2069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p>	<p>경북 영양 (○○○)</p>	<p>□ 창고시설 증축 ○ 위치 :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42-1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60m 이격) ○ 내용 : 창고시설 증축 - 대지면적 : 5,656.00㎡ - 건축면적/연면적 : 1,062.23㎡/1,062.23㎡ - 구조 : 1층/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 - 최고높이 : 6.90m - 외장마감 · 지붕 : THK-75 지붕용판넬(짙은회색) · 벽체 : THK-75 벽체용판넬(갈색 우드톤 색상)/코너부분 후레싱(짙은회색) · 문(주출입구) : 1층(75mm 행거도어 / THK-1.2mm 스틸 회색 갑종 방화문)</p>	<p>원안가결</p>	<p>‘20.10.27</p>
<p>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p>	<p>전북 장수 (○○○)</p>	<p>□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수리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26 * 보호구역 내 ○ 내용 : (명륜당, 동재, 서재, 사마재) 내부수리 - 명륜당 : 장판지 교체 - 동재, 서재, 사마재 : 벽지, 천장지, 장판지 교체</p>	<p>원안가결</p>	<p>‘20.10.2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청송 (○○○)</p>	<p>□ 인법당, 부속건물 보수 및 주변 정비(변경 허가)</p> <p>○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466 일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30m 이격)</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552 640 1126 1581"> <thead> <tr> <th data-bbox="552 640 632 685">구분</th> <th data-bbox="632 640 879 685">당 초</th> <th data-bbox="879 640 1126 685">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52 685 632 976">인법당 보수</td> <td data-bbox="632 685 879 976">-기단강화다짐 : 46.58㎡ -창호, 굴뚝, 반자보수 및 판문 설치 등</td> <td data-bbox="879 685 1126 976">-추가 · 디딤목 교체(3개소) · 천장 설치 및 단열재 깔기 · 부엌, 법당바닥 보일러 설치 · 계단 2개소(정면, 좌측면)</td> </tr> <tr> <td data-bbox="552 976 632 1155">요사채 보수</td> <td data-bbox="632 976 879 1155">-기단강화다짐 : 11.92㎡</td> <td data-bbox="879 976 1126 1155">-추가 · 디딤목 교체(3개소) · 자연석계단 5단 · 외편 굴뚝 해체 및 재설치</td> </tr> <tr> <td data-bbox="552 1155 632 1256">창고 보수</td> <td data-bbox="632 1155 879 1256">-기단강화다짐 : 9.39㎡</td> <td data-bbox="879 1155 1126 1256">-추가 · 고막이 좌,우,배면 굽어내기 후 재설치</td> </tr> <tr> <td data-bbox="552 1256 632 1581">석축 정비</td> <td data-bbox="632 1256 879 1581">-석축해체 47.31㎡ -석축설치 L=197.5m -자연석계단 3개소 설치 · A계단 : L=1.5m, W=1.5m · B계단 : L=0.9m, W=1.5m · C계단 : L=1.2m, W=1.5m</td> <td data-bbox="879 1256 1126 1581">-석축해체 47.31㎡ -석축설치 L=222m -자연석계단 3개소 설치 · A계단 : L=1.5m, W=1.8m · B계단 : L=0.9m, W=1.5m · C계단 : L=2.31m, W=6.5m</td> </tr> </tbody> </table>	구분	당 초	변 경	인법당 보수	-기단강화다짐 : 46.58㎡ -창호, 굴뚝, 반자보수 및 판문 설치 등	-추가 · 디딤목 교체(3개소) · 천장 설치 및 단열재 깔기 · 부엌, 법당바닥 보일러 설치 · 계단 2개소(정면, 좌측면)	요사채 보수	-기단강화다짐 : 11.92㎡	-추가 · 디딤목 교체(3개소) · 자연석계단 5단 · 외편 굴뚝 해체 및 재설치	창고 보수	-기단강화다짐 : 9.39㎡	-추가 · 고막이 좌,우,배면 굽어내기 후 재설치	석축 정비	-석축해체 47.31㎡ -석축설치 L=197.5m -자연석계단 3개소 설치 · A계단 : L=1.5m, W=1.5m · B계단 : L=0.9m, W=1.5m · C계단 : L=1.2m, W=1.5m	-석축해체 47.31㎡ -석축설치 L=222m -자연석계단 3개소 설치 · A계단 : L=1.5m, W=1.8m · B계단 : L=0.9m, W=1.5m · C계단 : L=2.31m, W=6.5m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0.27</p>
구분	당 초	변 경																	
인법당 보수	-기단강화다짐 : 46.58㎡ -창호, 굴뚝, 반자보수 및 판문 설치 등	-추가 · 디딤목 교체(3개소) · 천장 설치 및 단열재 깔기 · 부엌, 법당바닥 보일러 설치 · 계단 2개소(정면, 좌측면)																	
요사채 보수	-기단강화다짐 : 11.92㎡	-추가 · 디딤목 교체(3개소) · 자연석계단 5단 · 외편 굴뚝 해체 및 재설치																	
창고 보수	-기단강화다짐 : 9.39㎡	-추가 · 고막이 좌,우,배면 굽어내기 후 재설치																	
석축 정비	-석축해체 47.31㎡ -석축설치 L=197.5m -자연석계단 3개소 설치 · A계단 : L=1.5m, W=1.5m · B계단 : L=0.9m, W=1.5m · C계단 : L=1.2m, W=1.5m	-석축해체 47.31㎡ -석축설치 L=222m -자연석계단 3개소 설치 · A계단 : L=1.5m, W=1.8m · B계단 : L=0.9m, W=1.5m · C계단 : L=2.31m, W=6.5m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청송 (○○○)</p>	<p>□ 가을철 성수기 사찰 판매점 운영</p> <p>○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22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m 이격)</p> <p>○ 내용 : 목조 조립식 가건물 임시 운영 - 입장료 수입감소로 인한 사찰재원확보를 위한 판매점 운영 · 기간: 2020.10.24.~11.15.(3주간)</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0.2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656호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경북 성주 (○○○)	<input type="checkbox"/>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 위치 :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36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문화재로 부터 260m 이격) ○ 사업내용 - 18㎡(3X6) 컨테이너 설치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100호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 입상 및 보물 제101호 당진 안국사지 석탑	충남 당진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위치 :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690-39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20m 이격) ○ 내용 : 단독주택 부지 조성 토목공사 - 대지면적 : 350㎡ - 절토/성토 : 577.2㎡/345.2㎡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605호 고령 장거리 암각화	경북 고령 (○○○)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안내소 설치 ○ 위치 : 고령군 대가야읍 장거리512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65m 이격) ○ 내용 : 관광안내소 설치 - 구조 및 면적: 컨테이너 / 6.6㎡ - 용도 : 안내부스 ※ 공원부지 조성 관련 '16년 10차 건축분과 심의 결과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488호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경기 안성 (○○○)	<input type="checkbox"/> 농지 원상회복 및 유실수 식재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59-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4m, 문화재로 부터 103m 이격) ○ 내용 : 농지 원상회복 및 유실수 식재 - 부지면적 : 955㎡ - 주요내용 : 수풀 및 잡목 제거, 유실수 식재	원안가결	'20.11.0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p>	<p style="text-align: center;">충남 서산 (○○○)</p>	<p>□ 서산 개심사 명부전(충남 문화재자료 제194호) 보수공사</p> <p>○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p> <p>* 보호구역 내</p> <p>○ 사업내용 : 개심사 명부전 전체 해체보수 및 임시가설물 설치</p> <p>- 명부전 해체 보수</p> <p>· 면적 : 74.66㎡(22.58평)</p> <p>· 평면 : 정면 3칸, 측면 3칸</p> <p>· 기단 : 화강석 2벌대기단</p> <p>· 주초석 : 자연석 주초석</p> <p>· 구조 : 무고주 5량가구 도리</p> <p>· 지붕 : 맞배지붕, 한식흡기와 중와</p> <p>- 임시법당</p> <p>· 면적 : 75.60㎡(22.87평)</p> <p>· 구조 : 조립식 샌드위치패널</p> <p>· 이전대상 : 불단 및 지장보살상 등 23개</p> <p>- 가설컨테이너 2동 설치</p> <p>· 가설사무소, 창고 용도</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1.09</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평택 (○○○)</p>	<p>□ 숲가꾸기 산림사업</p> <p>○ 위치 :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산209-1 외 2필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0m 이격)</p> <p>○ 내용 : 숲가꾸기 작업 1식(골라베기)</p> <p>- 필지면적 : 6,191㎡</p> <p>- 벌채수량 : 2.4㎥(상수리나무 3본, 리기다 소나무 3본, 아까시 등 6본, 기타잡목 다수)</p> <p>* 전체 입목의 5% 이내</p> <p>- 벌채대상 : 잡목, 고사목, 불량목, 피압목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1.09</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이천 (○○○)</p>	<p><input type="checkbox"/> 영월암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변경 허가)</p> <p>○ 위치 : 이천시 관고동 438번지</p> <p>* 보호구역, 제1구역(문화재에서 40m 이격)</p> <p>* '20년 8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결과 : 조건부가결</p> <p>- 배면 암반으로 인한 건물 영향 없도록 보완, 검토</p> <p>○ 변경내용 : 수각 신축, 배수로 정비</p> <p>- 수각신축</p> <p>· 면적 : 4.41㎡</p> <p>· 구조 : 민도리, 맞배지붕, 1칸×1칸</p> <p>- 배수로 정비</p> <p>· 삼성각 우측 배수로 석축정비</p> <p>· L=5m, H=0.3m</p> <p>* 기 허가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삼성각 지붕보수></p> <p>- 삼성각 연목이상 해체·설치, 기와 해체·번와 (기와 90%교체, 연목, 부연 30% 교체)</p> <p><삼성각 주변 석축 및 바닥 정비></p> <p>- 삼성각 주변 바닥공사 : 기존 견치석 석축 한단 해체(H:200mm)</p> <p>- 삼성각 정면 화강석 계단 : 해체 후 설치</p> <p>- 삼성각 주변 자연석 석축(H:0.5~3.8m) 쌓기 : L=33m</p> <p>- 삼성각 정면 암반주위 자연석 석축(H:0.5~0.9m) 쌓기 : L=24m</p> <p>- 삼성각 배면 굴뚝 우측 자연석 석축(H:0.4m) 쌓기 : L=3.2m</p> <p><안심당 좌측 석축 정비></p> <p>- 신규 자연석 석축(H:1.2m) 쌓기 : L=45.8m (기존 석축에 연결하여 석축 설치)</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1.09</p>
<p style="text-align: center;">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p>	<p style="text-align: center;">충남 논산 (○○○)</p>	<p><input type="checkbox"/> 공중화장실 후면 옹벽 보강공사</p> <p>○ 위치 : 논산시 내동 산1-1</p> <p>* 제5구역(문화재에서 160m 이격)</p> <p>○ 사업내용 : 폭우에 따른 토사유실로 옹벽 보강</p> <p>- 옹벽설치(L=40m, H=4m)</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0.11.09</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경기 안성 (○○○)	<input type="checkbox"/>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위치 :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0번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35m 이격) ○ 내용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부지) 5,175㎡ (체험장) 399㎡ (건물높이) 6.5m (주차장) 786㎡ * 부지조성을 위한 절토로 높이 5m 석축 발생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435호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경기 안성 (○○○)	<input type="checkbox"/>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신축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3m 이격) * 인근 시도유형문화재 - 유형 제78호 안성죽산리삼층석탑(14.5m) - 기념물 제189호 안성봉업사지(277m) ○ 내용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신축 - 건축면적 (비닐하우스) 70.29㎡ / 높이 4.3m (가설건축물) 89.25㎡ / 높이 2.6m - 용도 : 비닐하우스(버섯사), 컨테이너 2동	조건부가결 (도문화재 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행)	'20.10.27
보물 제191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및 보물 제192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강원 강릉 (○○○)	<input type="checkbox"/> 보현사 수각 신축 ○ 위치 :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45m 이격) ○ 사업내용 - 목적 : 진입부 음수대를 우수 등 오염 으로부터 보호 - 경비 : 30,000천원(자부담) - 수각 신축 · 건축면적 : 5.76㎡ · 구조/양식 : 한식목구조/맞배지붕 · 층수 : 지상1층(최고높이 4.77m)	조건부가결 (수각 양식 간소화 필요)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응전 및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응전</p>	<p style="text-align: center;">충남 청양 (○○○)</p>	<p>□ 장곡사 설선당(충남 유형문화재 제151호) 해체 보수 및 봉향각 보수공사</p> <p>○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외 * 보호구역 내</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선당 해체 보수 · 기와 전체 해체 후 신재 10% 보충 · 훼손 기단 해체 후 재설치, · 우측 굴뚝 벽체 해체 및 재설치 · 산자이상 해체하되, 훼손 우려있는 보 및 도리 상태확인을 위하여 일부 구간 장·단연 각 총 78본 중 각27본 연목 해체 -석축배수로 보수 · 배부름 현상 발생한 설선당 우측면 석축과 계단 해체 보수 - 봉향각 보수(임시중무소로 사용 중) · 외부 기단 바닥 해체 후 생석회 다짐 ·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 내부 벽지, 장판 등 수장공사, 창호교체 등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시공시 하 대응전 등 주변 문화재 안전조치 수립 후 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20.10.2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국보 제54호 구례 연곡사 북 승탑</p>	<p>전남 구례 (○○○)</p>	<p>□ 공중화장실 및 안전난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2m, 삼층석탑에서 113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난간 : L=80m(W1.5m×H1.1m) * '19년 13차 자체회의 결과 : 원안가결 ⇒ 안전난간 264m 설치 - 모바일화장실 설치 * 나라장터 조립식 가설건축물 · 골조(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외장(한식기와, 방수목재, 석재타일) · 규격 : L(8.3m)×W(3.2m)×H(5.2m) · 기초공사 : L(9.2m)×W(4.2m)×D(0.2m) · 토공사 : 배수로 40m(400mm) · 정화조 설치 : 7m³/일 	<p>조건부가결 (노후된 기존 화장실 철거)</p>	<p>'20.11.09</p>
<p>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p>	<p>전남 여수 (○○○)</p>	<p>□ 여수 진남관 공영주차장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여수시 중앙동 511외 15필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7m, 문화재에서 43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2,782m² - 주차대수 : 208대 - 건축면적(연면적) : 2,145.89m²(6,437.67m²)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3층 / 14.7m 	<p>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p>	<p>'20.11.09</p>
<p>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p>	<p>전남 여수 (○○○)</p>	<p>□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여수시 고소동 636-4번지 * 보호구역,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0m, 문화재에서 22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2,068m² - 주차대수 : 129대 - 건축면적(연면적) : 1,212.4m²(3,637.2m²)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3층 / 14.8m 	<p>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p>	<p>'20.11.09</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 삼존상 및 여래좌상</p>	<p>경북 영주 (○○○)</p>	<p>□ 영주 택지 가흥동주공아파트 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및 정비공사 ○ 위치 : 영주시 가흥동 264-17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 인접),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50m 이격) ○사업내용 - 아스콘덧씌우기(T=0.05m, B=4.3~7.5m) : L=160.0m, A=954.0㎡ - 아스콘포장 : A=216.0㎡</p>	<p>부결 (역사문화 환경 저해)</p>	<p>'20.11.09</p>